

| SRI-기본-2018-15 |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Spatial Boundary and Characteristics
of Suwon City-Region

이성호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성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권이선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2018년 10월 31일

ISBN 979-11-89160-34-0 (9398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성호. 2018.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 변화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수원은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수원의 주변 지역들은 시 승격 이전 동일한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상당수를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와 오산시 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일부 지역도 경관상으로는 명확한 경계를 구분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연담도시화(conurbation)가 진행되면서 수원과 도시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수원시와 강한 연계성을 가진 수원의 도시권(city-region)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6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주요 목적별 통행량을 활용하여 중심도시 수원과 주변지역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도시 통근권, 도시 업무권, 도시 일상생활권의 3개 기능별 도시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기능별 도시권의 설정을 위해 의존도와 점유율, 통행량 비중의 세 가지 지표를 각각 도출하고, 세 지표 중 두 가지 이상의 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1차적인 도시권 후보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는 등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기능별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3가지의 기능별 도시권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을 주요 기능과 활동 모두가 수원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실상 수원과 도시 활동을 같이하는 지역으로 보고 ‘동일도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2가지의 도시 기능 측면에서 수원시와 밀접하게 기능적 연계를 가진 지역은 ‘밀접도시권’으로, 도시 주요 기능의 일부가 연계되어 있는 광역적 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계도시권’으로 각각 개념화하였다.

도시권 설정의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수원 도시권의 주요 지역이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용인시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원시가 경기 남부지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동시에 도청, 주요 기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수원의 북쪽으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고차 중심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 도시권은 그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수원 이남지역으로 치우쳐 있고, 북쪽으로는 행정경계를 접한 의

왕시 등 극히 일부지역만이 포함된다.

각 기능별 도시권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거와 고용의 교외화 현상에 따라 통근과 역통근을 반영하는 도시 통근권의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쇼핑, 여가 등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권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06년의 수원 도시권에 비해 201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수원의 남부지역에 접해있는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세 가지 도시기능 중에서 특히 일상생활권의 공간적 범위가 가장 크게 축소되었으며, 통근권과 업무권의 경우 남쪽의 상당수 지역이 제외되는 동시에 북쪽의 일부 지역이 새로 편입되면서 2006년에 비해 북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2016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수원과 사실상 도시 기능을 공유하는 '동일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의 변화에 대해 주요한 원인으로는 수원 도시권의 대다수를 형성하던 화성시와 용인시 일대에 여러 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원 도시권의 축소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남부 지역의 경우 2000년대 후반 동탄 신도시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기존 수원시가 제공하던 도시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특히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제공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쇼핑, 외식, 여가 등 일상생활권의 범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그 변화양상을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에 기초한 광역적 도시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도시권의 개념과 특징	9
1. 도시의 규모와 도시기능	9
2. 도시권의 형성과 발달	12
제2절 도시권 설정의 국내·외 사례	16
1. 외국의 도시권 설정 사례	16
2. 국내 도시권 설정 관련 선행연구	18
3. 수원 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19
제3장 수원 도시권의 설정 방법	29
제1절 도시권 설정 방법 검토	29
1. 중심도시의 선정	29
2. 도시권 설정의 기준 및 지표	31
제2절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36
1. 수원 도시권 설정 방식의 특징	36
2. 도시권 설정 방법	37
제4장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징	43
제1절 200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43
1. 통근권	43
2. 업무권	49
3. 일상생활권	54

4. 종합	60
제2절 201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63
1. 통근권	63
2. 업무권	69
3. 일상생활권	74
4. 종합	79
제3절 수원 도시권의 변화양상과 특징	82
1. 2006~2016년 도시권의 변화 양상	82
2. 2006~2016년 기능별 도시권의 변화 양상	84
제5장 요약 및 결론	91
참고문헌	95
부 록	97

표 차례

〈표 2-1〉 한국도시의 순위규모분포상의 q계수의 변화	12
〈표 2-2〉 수원시 일대의 행정구역 변화	20
〈표 2-3〉 수원 2차 도시권의 교외지역	24
〈표 3-1〉 주변지역의 도시성 및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관련 지표	32
〈표 3-2〉 국내외 도시권 설정기준 관련연구 비교	32
〈표 3-3〉 통계청(2007)의 도시권 획정 기준 설정 결과	34
〈표 3-4〉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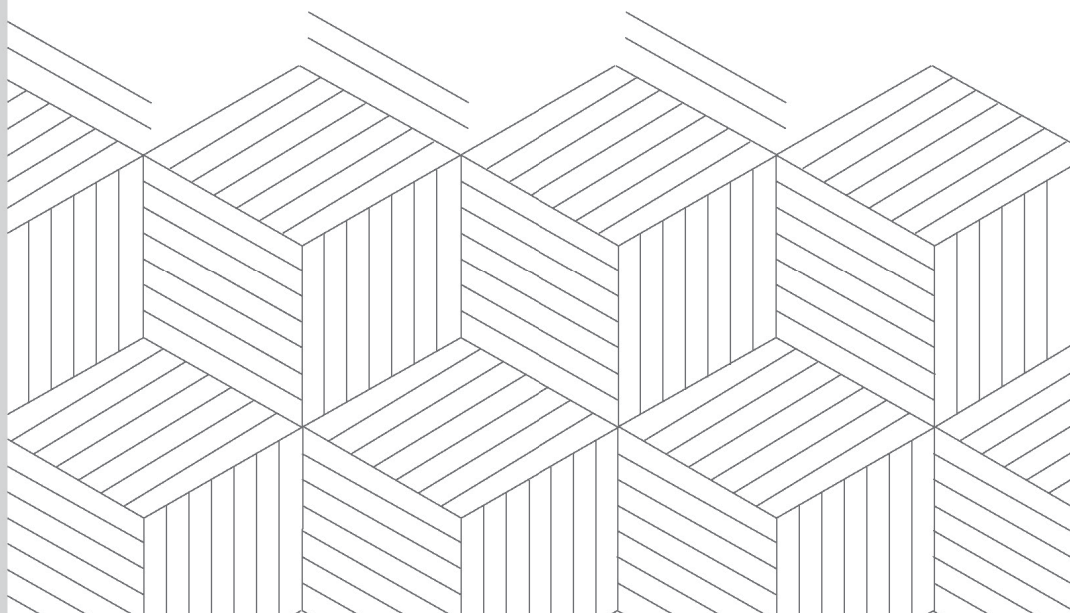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과정	10
〈그림 2-2〉 고려시대 수주와 조선후기 수원부의 영역	21
〈그림 2-3〉 1914년 수원군의 영역	22
〈그림 2-4〉 수원 2차 도시권의 구분 - 시·군 단위와 시·읍·면 단위	24
〈그림 2-5〉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25
〈그림 4-1〉 직업의존도 분포	44
〈그림 4-2〉 직업점유율 분포	45
〈그림 4-3〉 통근통행량 비중 분포	46
〈그림 4-4〉 도시 통근권 설정 1차 결과	47
〈그림 4-5〉 도시 통근권 설정 최종 결과	48
〈그림 4-6〉 업무의존도 분포	50
〈그림 4-7〉 업무점유율 분포	51
〈그림 4-8〉 업무통행량 비중 분포	52
〈그림 4-9〉 도시 업무권 설정 1차 결과	53
〈그림 4-10〉 도시 업무권 설정 결과	54
〈그림 4-11〉 생활의존도 분포	56
〈그림 4-12〉 생활점유율 분포	57
〈그림 4-13〉 생활통행량 비중 분포	58
〈그림 4-14〉 도시 일상생활권 설정 1차 결과	59
〈그림 4-15〉 일상생활권 설정 결과	60
〈그림 4-16〉 2006년 기준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62
〈그림 4-17〉 직업의존도 분포	64
〈그림 4-18〉 직업점유율 분포	65
〈그림 4-19〉 통근통행량 비중 분포	66
〈그림 4-20〉 도시 통근권 설정 1차 결과	67
〈그림 4-21〉 도시 통근권 설정 최종 결과	68

〈그림 4-22〉 업무의존도 분포	70
〈그림 4-23〉 업무점유율 분포	71
〈그림 4-24〉 업무통행량 비중 분포	72
〈그림 4-25〉 도시 업무권 설정 1차 결과	73
〈그림 4-26〉 도시 업무권 설정 결과	74
〈그림 4-27〉 일상생활의존도 분포	75
〈그림 4-28〉 일상생활점유율 분포	76
〈그림 4-29〉 일상생활통행량 비중 분포	77
〈그림 4-30〉 도시 일상생활권 설정 1차 결과	78
〈그림 4-31〉 일상생활권 설정 결과	79
〈그림 4-32〉 2016년 기준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81
〈그림 4-33〉 2006-2016년 도시권의 변화	83
〈그림 4-34〉 2006~2016년 도시 통근권의 변화	85
〈그림 4-35〉 2006~2016년 도시 업무권의 변화	86
〈그림 4-36〉 2006~2016년 도시 일상생활권의 변화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정보통신 기능의 발달에 따라 고용, 교육, 여가 등 도시기능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주거공간이 확대되는 전통적인 주거 교외화(suburbanization)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교외화에 따른 통근 및 역통근의 증가 등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 연계의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구분단위가 되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시권(city-region)은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선 도시기능의 실질적 공간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중심도시와 높은 기능적 연계성을 가진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도시권은 도시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인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며, 두 지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통근, 통학,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기능적 연계를 맺는다(노승철 외, 2012).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 정도는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즉 중심도시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확장되지만, 중심도시 내부의 토지이용 변화나 주변지역과의 교통망 변화 등에 따라 그 확장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며, 기반산업의 침체 등에 따른 도시인구의 감소로 인해 그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 즉 도시는 유기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기 때문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한상진 외, 2014).

수원시는 124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경기도청의 소재지로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이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소재한 산업과 고용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수원시를 경기도의 수부도시(首府都市)이자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원과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수원시 행정구역 내에서 최근 광고신도시, 호매실 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통해 불과 10여년 사이에 20만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 용인시 등의 변화는 수원에 비해 더욱 급격하고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미 1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화성시 역시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역시 커다란 변화를 보일 것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역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역사문화적 또는 도시 기능적 연계를 바탕으로 화성, 오산 등 인접 지역을 수원 도시권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며, 여기에 대한 논란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화성, 오산은 과거 수원의 시 승격 이전 동일한 행정구역을 형성하면서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문화권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도 수원과 이들 지역간의 긴밀한 경제·사회적 연계와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위 지역별로 공간적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원 도시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후반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그 불발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 도시권의 설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국 혹은 수도권 단위의 도시권 획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수원은 단순히 서울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07) 등 일부 연구에서 서울 대도시권의 2차 도시권으로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특성이나 설정에 따른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국 또는 수도권 단위의 분석을 위해 시·군·구 스케일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수원 도시권의 명확한 범위를 규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보다 구체적인 공간적 스케일에 바탕을 둔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밝히는 한편, 시계열적인 비교를 통해 수원 도시권의 변화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기능에 따른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밝히고, 수원과 주변 지역의 도시 발달 과정에 따라 수원 도시권의 범위와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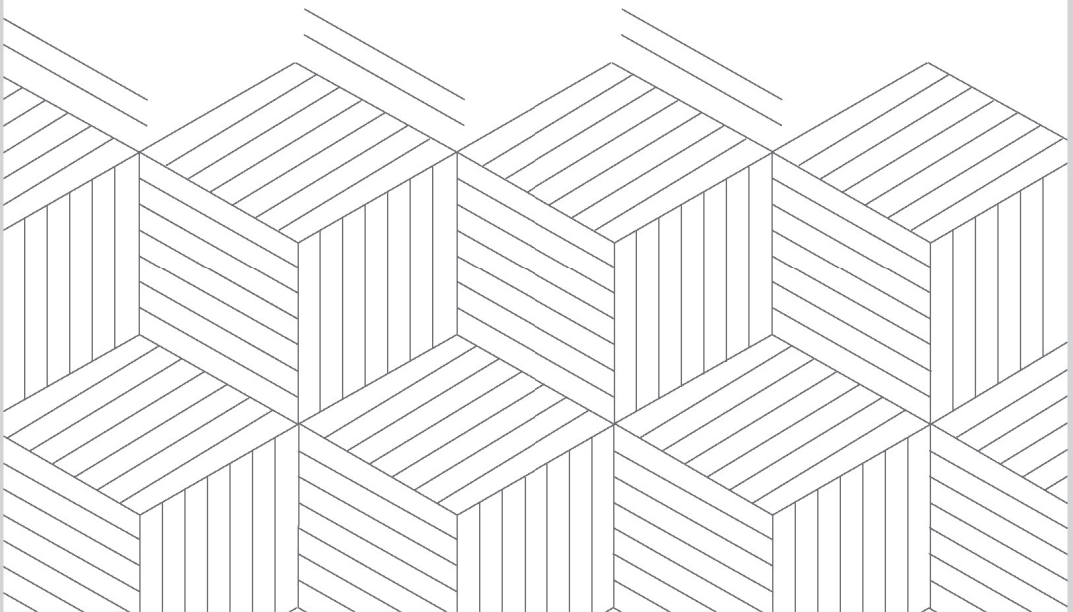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방법론의 검토 등을 위해 문헌연구 역시 포함한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도시권 설정의 기준 및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수원 도시권 확정에 적용가능한 분석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자료는 국가교통DB 등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한 읍·면·동 단위의 O/D 행렬을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장거리 통행실태조사, 여객시설물 이용실태조사, 고속도로 요금소조사, 교통량조사, 전세버스 조사로 구성된 전국여객통행조사의 하위 조사에 해당한다. 전국여객통행조사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교통체계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국민의 통행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기종점통행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로, 1998년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정기 국가교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조사는 1998년에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 2차, 2010년에 3차, 2016년도에 4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4차 조사의 경우 2015년 예정이었으나, 통계청 인구 센서스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6년에 수행되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크게 평일통행조사와 주말통행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역단위로 조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읍·면·동 단위의 목적지 통행실태를 원시자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읍·면·동 단위 분석에 유일하게 활용가능한 자료인 동시에, 통행목적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분석의 기초자료로 선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분석자료인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범위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이며, 수도권 인접 지역간에 발생하는 통행은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년도인 2016년과 함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2006년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도시권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도시권 설정의 국내·외 사례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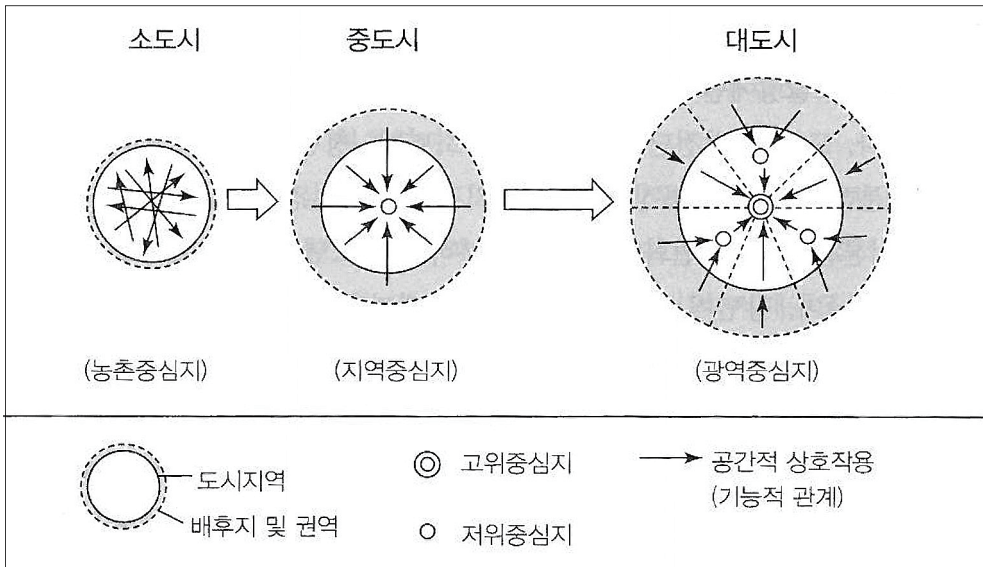
제1절 도시권의 개념과 특징

1. 도시의 규모와 도시기능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등 도시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적·장기적 계획에서 가장 앞부분에 제시되는 것이 장래의 도시 인구규모에 대한 예측이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규모가 단순히 도시의 공간적 스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배치와 공간계획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인구규모가 크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고차의 도시 기능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도시 서비스를 주변지역으로까지 폭넓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인구규모가 큰 도시는 해당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농촌중심지(rural core)로서의 소도시는 공간적 분화나 중심지의 형성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배후지가 좁고 지역 내에서 주민의 이동이 질서 없이 무작위로 발생한다. 하지만 소도시가 중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도시기능의 핵이 되는 도심이 나타나게 되고, 도심을 중심으로 배후지에 대한 견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중심지(loca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공간적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주민의 이동은 이전과 달리 중심지와 배후지 간의 기능적 관계에 기초하여 도심을 향하는 형태가 중심이 된다. 중도시가 다시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도심의 과밀화로 인해 기능의 일부가 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부도심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핵 구조는 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다핵구조로 변화하게 되며, 도심과 부도심은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면서 보다 넓은 배후지를 가진 광역중심지(regional center)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남영우, 2015).

〈그림 2-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과정



출처: 남영우(2015), p.98

도시의 인구규모와 도시기능 간의 관계는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도 잘 드러난다. 크리스탈러는 1933년 발표한 『남부독일의 중심지』(Die Zentralen Orte in Süddeutschland)에서 중심지의 분포에 관한 법칙을 제시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주변지역에 대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의를 도 모해 주는 장소인 중심지는 중심지 상호 간의 중심성 및 배후지역의 크기 차이에 따라 서열관 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중심지 계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심지 계층에서 인구규모 가 큰 중심지가 인구규모가 적은 중심지보다 보다 고차계층의 중심지가 된다. 물론 중심지 계층은 인구규모에 따른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차 중심지는 중심성이 높 고 보완구역이 크기 때문에 그 수가 적고, 저차 계층의 중심지로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게 된다(권용우 외, 2016).

특정 국가나 지역의 도시들은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 두 번째 도시는 수위도시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인구규모를 가지게 되고, 세 번째 도시는 수위도시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인구규모를 가진다. 이처럼 도시의 인구규모와 순위 간에 반비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련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을 도시의 순위규모법칙 (rank size rule)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_r = P_1 / r^q$$

P_r : r 번째 순위도시의 인구규모

r : 인구규모에 의한 순위

q : 상수

P_1 : 순위도시의 인구규모

이 때 상수 q 가 1로 나타나는 경우를 순위규모분포(rank size distribution)이라고 하며, 순위도시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상수가 1보다 커지는 경우를 종주분포(primate distribution)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선진국이나 상대적으로 대외 경제의존도가 낮은 국가, 연방제 등을 통해 지역분권 경향이 강한 국가에서 순위규모분포가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며, 이와 반대로 인구규모가 적고,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가진 국가, 개발도상국가 등에서는 종주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권용우 외, 2016).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인 1955년에는 상수 q 의 값이 1.07로 상대적으로 순위규모분포에 가까웠으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q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다시 1970년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순위도시로서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였다기보다 다른 도시들의 인구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러한 인구 증가를 주도한 것이 바로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의 도시들이라는 점에서 종주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러한 q 값의 변화는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과 주택부족 문제에 따른 수도권 주변도시로의 이주 경향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서울의 공간적 확장이며, 이에 따라 서울도시권의 종주도시화는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1〉 한국도시의 순위규모분포상의 q계수의 변화

연도	q계수	연도	q계수
1949	1.12169	1985	1.28051
1955	1.07663	1990	1.26495
1960	1.15762	1995	1.23957
1966	1.13384	2000	1.20220
1970	1.14515	2005	1.18331
1975	1.16522	2010	1.16727
1980	1.28084		

주: 인구 2만 명 이상의 시, 읍을 대상으로 함
출처: 권용우 외(2016), p.149

2. 도시권의 형성과 발달

1) 도시권의 개념과 정의

도시권(city-region)은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도시 기능의 확대에 따라 중심으로서의 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에 긴밀한 기능적 연계가 나타나는 권역을 가리키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시권은 도시지역인 중심도시와 그 주변에 위치하면서 중심도시에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배후지역(주변의 소도시와 전원지역)이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즉,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은 직장 및 쇼핑, 교육,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아우른다. 따라서 도시권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 경제적 연계, 통근권, 소매상권 등을 의미하지만,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바탕으로 한 도시 정체성의 영역으로 폭넓게 바라보기도 한다(노승철 외, 2012; 임석희, 2018).

도시권은 개념적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중심도시를 핵으로 통근 등 주요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이 된다. 이 때 공간적 범위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연계성은 주로 통근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도시적 특성은 주변지역의 비농업종사자율 등을 주로 활용한다.

도시권의 형성과 발달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기능 집적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과밀화는 도시권 형성과 발달의 일차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데, 중심도시의 기능 포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 주변지역으로 중심도시의 일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권은 발달하게 된다. 중심도시의 인구 증가 이외에 교통망의 발달 역시 도시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심도시에서 과도한 인구증가나 산업집적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적절한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도시 기능의 확산이 일어나기에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주변지역의 취업기회 확대, 중심도시의 주택부족과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주거환경의 악화 등과 함께 정부의 인구분산정책 등도 도시권의 형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석희, 2018).

도시권 이외에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도시의 실질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우선 ‘도시화지역’(urbanized area)을 들 수 있는데, 도시권이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으로서의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가리킨다면, 도시화지역은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으로서의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등질지역과 기능지역¹⁾은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할 때 활용되는 개념들 중 하나인데, 등질지역이 토지이용 등 등질적 속성이 나타나는 지역적 범위를 가리키는 반면, 기능지역은 동일한 중심지의 기능적 지배를 받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남영우, 2015). 즉, 등질지역으로서의 도시화지역은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이 유사한 지역을 구분한 것인 반면,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높은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지역을 가리키게 된다.

도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OECD에서는 ‘기능적 도시지역’(functional urban area)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에 기반한 도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능적 도시지역이란 사람들이 고밀도로 거주하는 ‘도시중심’과 ‘배후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실제 사람들의 생활권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능적 도시지역의 설정 역시 두 지역간의 통근통행량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시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OECD가 기능적 도시지역의 개념을 주장한 배경에는 도시의 행정구역 범위와 실질적인 기능적 범위의 불일치,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협조체계의 미비로 인해 도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광역도시문제의 출현이 자리하고 있다(한상진 외, 2014).

도시권과 유사한 또 다른 개념으로 ‘광역권’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시권이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와 중심도시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2개 이상의 공

1) 이외에 결절지역(nodal area)도 있는데, 기능지역과 결절지역은 많은 경우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기능지역은 기능적으로 통일된 지역적 범위로 배후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장(field)의 개념인 반면, 결절지역은 배후지의 경계가 중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역(territory)의 개념이다. 따라서 결절지역의 경우 배후지를 종식시키는 중심지가 반드시 존재하고 중심지간에 계층적 관계가 존재한다.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결절지역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남영우, 2015).

간단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광역권의 경우 도시 활동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기능의 공간적 범위보다는 오히려 정책적 차원에서 다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보다 넓은 공간적 단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도시권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도시권의 의미와 필요성

도시권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대로, 이미 지리학과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도시권의 개념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다양한 권역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획정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보다는 공간체계의 변화란 측면에서 도시권의 형성과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도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지역 간의 교류 확대에 따라 도시 네트워크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될 뿐 아니라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를 더 이상 하나의 분리되고 고립된 단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나 협력, 기능의 재배치와 분산과 같은 공간패턴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세계화와 자본주의 경쟁체계의 심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경제활동과 신지역주의 패러다임의 확산에 따라 개별 도시의 경쟁력보다는 도시권내 지역들 간의 상호협력과 보안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새로운 정보와 노하우를 창출하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한 상호보완적 유대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도시권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Parr, 2005; 노승철 외, 2012).

개별도시 단위가 아닌 도시권으로의 접근방법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노승철 등(2012)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우선 기존의 개별 도시보다 큰 공간단위를 영역화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역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으로, 노동력의 공급 부족, 주택 및 토지 공급 등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간적 범위의 확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권 내부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으로, 기존 개별 도시 단위의 도전에 비해 불확실성과 실패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다(Rodriguez-Pose, 2008). 마지막으로 도시권은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정책의사결정자와 시민들 간의 신뢰 창출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이다. 즉, 도시권의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자와 시민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 근접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시에 도시권 차원의 접근은 단점 역시 가지게 되는데, 우선 도시권의 거버넌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율적 관계이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와해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권 차원의 정책결정이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비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권 간의 경쟁에서 한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혁신의 창출에 기반 하기보다 다른 도시권의 자본과 기능을 끌어오는 것을 통한 상대적인 경쟁력 확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권 간의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노승철 외, 2012).

도시권의 성장과 번영은 도시권 자체가 도시권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과 자원, 그리고 공동의 합의를 얼마나 잘 도출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도시권을 구성하는 행정 단위간의 제도적 협력과 더불어 도시권 내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체들간의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과 같은 비제도적인 상호연계의 구축 정도에 따라 도시권의 성장 여부가 결정된다. 도시권 정책이 개별 도시 보다는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도시권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도시권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역시 도시권의 성장을 위해 요구된다(Healey, 2009).

제2절 도시권 설정의 국내·외 사례

1. 외국의 도시권 설정 사례

1) 미국의 CBSA(Core Based Statistical Area)

미국의 CBSA는 재정운영과 정부관리를 총괄하는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연방정부기관이 통계 조사와 집계, 공표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설정한 도시권이다. 2000년에 기존의 MA(Metropolitan Area)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기존의 MA 체계 하에서는 중심도시의 인구 규모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권(대도시통계지역, MSA :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획정하는 반면, CBSA에서는 여기에 더해 인구 1만 명 이상 5만 명 이만의 소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권(소도시통계지역, mic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획정하며, 대도시와 소도시와의 통합권역(혼합통계지역, Combined Statistical Area)도 포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구밀도, 도시인구 비율 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 지표를 같이 활용했던 MA와 달리 CBSA에서 도시권의 설정 기준은 오로지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의 '통근율'과 중심도시에서 주변도시로의 '역통근율'만을 활용한다. 구역 설정의 기본단위는 카운티(county)이며,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화 지역(urbanized area) 내에서 상주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카운티가 중심도시로 설정된다. 교외지역에는 중심도시의 주변에 위치한 카운티 중 상주취업 인구의 25% 이상이 중심도시로 통근하거나, 중심도시의 상주취업인구가 해당 카운티 전체 취업자수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카운티가 포함된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374개의 대도시통계지역과, 581개의 소도시통계지역이 설정되어 있다(변필성·김광익, 2007; 권용우 외, 2016).

2) 일본의 도시권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 통계국의 대도시권과 도시권 이외에 도시고용권(UEA, Urban Employment Area), 기능적 도시권역(FUR, Functional Urban Region) 등도 사용된다. 우선 총무성 통계국에서 설정한 대도시권과 도시권의 경우 국제조사(国勢調査, 일본의 센서스 조사) 자료를 활용해 설정하며, 설정의 공간 단위는 모두 시정촌이다. 대도시권은 도쿄도와 정령지정도시를 중심도시로, 도시권은 도쿄도와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중심도시로 설정하며, 교외지역에는 상주인구 중 중심도시로 통근·통학하는 15세 이상의 인구가 1.5% 이상이면서 중심도시와 연접한 시정촌이 포함된다. 2005년 기준으

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칸토 대도시권을 비롯하여 삿포로, 센다이, 시즈오카, 류큐, 게이한신, 히로시마, 기타큐슈-후쿠오카의 8개의 대도시권과 니카타, 하하마쓰, 오카야마, 마쓰야마, 구마모토, 가고시마의 6개 도시권이 설정되어 있다(통계청, 2007).

도시고용권은 가네모토와 도쿠오카가 제안한 도시권으로 중심 시정촌과 교외 시정촌으로 도시권을 규정하는데, 이 때 중심 시정촌의 기준은 인구 1만 명 규모이다. 교외지역은 통근통행량과 고용인구비율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중심도시로의 통근비율이 10% 이상인 시정촌을 1차 교외 시정촌으로, 상주인구의 10% 이상이 1차 교외 시정촌으로 통근하고, 그 비중이 다른 시정촌으로의 통근비율보다 높은 지역을 2차 교외 시정촌에 포함한다. 기능적 도시권역은 중심도시를 인구 10만 명 이상, 야간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이 1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하며, 교외지역은 중심도시로의 통근자 수가 500명을 초과하고 통근자수가 해당 시정촌 상주취업인구의 5%를 넘는 경우로 지정한다(통계청, 2007; 한상진 외, 2014)

3) 그 외 국가의 도시권 설정

캐나다의 경우에는 통계청이 1951년 센서스부터 공식적으로 CMA(Census Metropolitan Area)와 CA(Census Agglomeration)을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CMA와 CA 역시 중심도시(urban core)를 중심으로 그에 공간적으로 연결한 CSD(Census Subdivision)으로 구성되는데, CMA의 중심도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이 되며, 인구 1만 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도시지역은 CA의 중심도시가 된다. 교외지역은 사전에 설정된 7가지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CSD를 교외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기준은 ‘중심도시에 포함 또는 일부가 겹치는 지역 → 상주취업인구의 50% 이상이 중심도시로 통근(통근자수 100명 이상) → 전체 취업인구의 25% 이상이 중심도시에 상주(통근자수 100명 이상) → 공간적 연결성 → 시계열적 자료 구축을 위해 이전에 도시권에 포함되었던 CSD를 포함 →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에 대한 조정 → 도시권간의 통합 여부’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통계청, 2007).

영국의 표준대도시노동권(SMLA, Standard Metropolitan Labour Areas)는 고용규모 2만 명 이상, 고용밀도 2.12명/ha 이상이며, 이를 구성하는 자치구들이 지리적으로 연결한 지역을 중심도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취업인구의 15% 이상이 중심도시에 취업하거나 자치구들이 상호연접 또는 중심도시에 연결하고 있는 지역이 해당한다. SMLA를 구성하는 핵심부와 주변부의 상주인구는 7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권창기·정현욱, 2007).

2. 국내 도시권 설정 관련 선행연구

해외에서 주로 도시권을 다루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특정 도시권 내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분석하는 유형이 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단위에서부터 로컬 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도시권 규모에서 각각 작용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밝히고, 세계화에 따른 도시권의 변화를 탐색하는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도시적 삶을 영위하는 것은 각자가 지닌 상이한 비전과 목적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비전과 목적은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도시권의 개념과 전략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맥락에서 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아젠다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다(Healey, 2009; Sassen, 2001; 노승철 외, 2012).

이에 비해 국내의 도시권 관련 연구는 해외와 비교할 때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 초기에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능 모두가 집중되는 국내의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밝히고 그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하게 많은 선행연구들이 도시권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을 뿐 주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주로 치중되어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도시권 자체보다는 주로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초기 단계에서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연구들은 지역간의 연계성과 함께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국내의 도시권 설정 연구들 역시 해외의 도시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통근통행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권의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도시권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가 위치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다루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국내의 주요 도시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권의 도입을 위해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통계청(2007)의 연구가 국내 도시권 관련 연구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다른 해외국가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새로운 통계적 공간단위로서의 도시권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통해 도시권 확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 적용하여 전국적인 도시권을 확정하였다. 다만 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도시권의 확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권을 확정하는데 크게 절대도시권과 상대도시권을 구분하여 별도의 도시권 확정을 시도하였다. 이 때 절대도시권은 인접 중심도시의 영향권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만족하는 모든 지역을 도시권에 포함한 것이며, 상대도시권은 특정 지역이 인접한 복수의 중심도시의 도시권에 모두 포함될 경우 더

연계성이 높은 하나의 도시권에만 포함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한 공간적 단위 역시 시·군 단위 및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공간적 단위의 적절성 역시 검토하였다. 도시권 설정을 위한 지표로는 통근율과 역통근율, 그리고 통근율과 역통근율의 합을 활용하였다.

김범수(2010)의 경우 통근통학 및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성에 기반한 강원도의 도시권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도 내에 춘천시권, 원주시권, 강릉시권, 동해시권, 속초시권의 5개 도시권이 존재하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은 어느 도시권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차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5개 도시권의 일부로 각각 포함시켰다.

노승철 외(2012)의 경우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등 지표에 의한 통근·통행권과 목적별 통행자료를 인자분석을 통해 분석한 일생활권,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주거이동권의 3가지 방법에 따라 도시권을 각각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도시권 설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서울대도시권, 부산대도시권 등 5개 대도시권과 진주도시권, 포항도시권 등 16개 중소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권창기·정현욱(2007)은 수도권과 대구권, 부산·울산권의 기능적 연계성에 따른 광역도시권의 설정을 위해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직업의존도,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통근통행량의 3가지 설정기준을 통해 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해당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였다. 임석희(2017)의 경우에는 통근통학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 광역도시권의 형성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 및 고용분포 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3. 수원 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1) 수원의 행정구역과 영역 변화

행정구역으로서의 수원시(市)는 1949년 기존의 수원읍(邑)이 여수, 순천, 포항, 김천과 함께 부(府)로 승격하고 이어서 같은 해 부가 일괄적으로 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즉 수원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市’가 된 지역 중 하나로, 내년 시 승격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 모태가 된 수원읍은 1914년 일제 강점기 하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만들어진 수원군(郡) 내의 수원면(面)이 1931년 읍으로 승격된 것이다.

1949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수원부가 수원시로 바뀐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부’가 여전히 ‘군’에 소속된 행정단위인 반면, ‘시’는 ‘군’에서 독립하여 군과

동일하게 도 아래에 위치하는 별도의 행정구역이라는 점이다. 즉, 시 승격을 통해 기존의 수원읍은 수원군의 중심지역에서 수원군과 분리된 별도의 행정구역이 되었으며, 수원의 시 승격과 함께 기존의 수원군이 현재의 화성시에 해당하는 화성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원시와 수원시 주변의 지역은 행정체계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서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역사적으로 수원시와 주변 지역은 시기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행정구역상의 범위 역시 시기별로 달라졌는데,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의 일부 지역이 시기별로 수원시와 동일한 행정구역을 형성하였다. 현재의 수원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과거 행정구역은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에는 수성군, 고려시대에는 수주, 조선시대에는 수원부, 일제 강점기에는 수원군에 해당하며, 현재의 오산시와 화성시의 북·동·남부지역은 수원시와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지속적으로 묶였다. 현재의 화성시 남양읍 일대는 일제 강점기 수원군의 영역에 포함되면서부터 비로소 수원시와 동일한 행정구역을 형성한 반면, 조선시대에는 청북면 등 평택시의 서부지역이 오히려 수원부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표 2-2〉 수원시 일대의 행정구역 변화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	지역
매홀군	수성군	수주	수원부	수원군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북·동·남부지역
당성군	당은군	당성군	남양부	수원군	화성시 남양읍 일대(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경기만 도서)
상홀현	차성현	용성현	수원부	진위군	평택시 서부지역(청북면, 고덕면 일부,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일대)

출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2014), p.214

〈그림 2-2〉 고려시대 수주(上)와 조선후기 수원부(下)의 영역



출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2014), p.216, 239

수원시가 경기 남부 일대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대에 현재의 수원시 지역에 화성(華城)을 축조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부터이다. 정조는 1793년 기존의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화성 축조를 시작하였으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천봉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화산시 안녕동에 해당하는 화산 일대의 기존 읍치를 현재의 수원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수원시 일대를 신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통해 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정조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현재의 수원시 지역은 화성유수부의 행정·경제의 중심지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수원시 일대가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공간적 범위를 가지게 된 것은 일제시기 이루어진 1914년 행정구역 개편부터로, 이 때 수원군은 현재의 평택시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위군에 내주는 대신 남양군 전역과 안산군 및 광주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면서 현재의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를 합친 지역의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림 2-3〉 1914년 수원군의 영역



출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2014), p.254

수원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해당하는 수원군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지역에 대해 현재까지도 ‘수원 문화권’ 혹은 ‘정조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지역의 가장 최근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의 동일한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10년 대에 접어들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추진 지원 정책에 따라 수원과 화성, 오산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또 다시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뜻하는 이른바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의 줄임말)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의 상당 지역이 사실상 영통구와 도시공간과 기능 측면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고 최근에는 광교신도시 조성에서 개발구역을 공유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오산시나 화성시에 비해 이른바 ‘수원지역’이라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오산·수원·화성 민주당 시장후보 3명, ‘상생협력’ 선언

2018.05.28. / 경향신문

경기 오산·수원·화성시 3개 지자체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들이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상욱(오산), 염태영(수원), 서철모(화성) 후보는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7기 출범 즉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조대왕 문화권인 오산·수원·화성시는 조선 후기 문화부흥의 중심지였을뿐 아니라 조선의 민생과 산업·국방의 전초기지였고, 지금까지도 하나의 경제·생활문화권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조건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민주당 3개 시 시장 후보들이 협력행정을 펼쳐나갈 때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큰 힘을 얻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 지자체 시장 후보들은 지방분권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성공’ 뒷받침, 민선 7기 출범 즉시 ‘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협력기구’ 구성, 지역간 갈등 발생시 합리적 대화로 해결·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우선으로 지원 등 3가지 큰 틀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 수원 도시권 설정 관련 연구

현재까지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증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전국 혹은 수도권 단위의 도시권 설정에 관한 일부 연구들에서 수원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권 설정의 기준과 방법을 탐색한 노승철 외(2012)의 연구에서 수원시는 38개의 잠정적 중심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상통행권 분석의 과정에서 업무통행의 경우 화성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를 연계지역으로 하는 소규모 업무통행권의 중심도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통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 모두 서울도시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원이 별도의 도시권을 형성한다기 보다는 서울도시권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2차 도시권의 중심도시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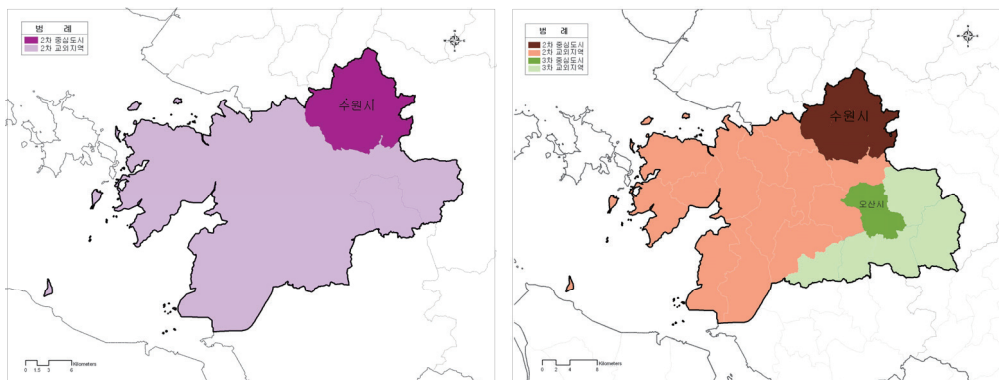
통계청(2007)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권 획정의 방법과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전국 단위에서 여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원은 최종적으로는 서울 도시권에 포함되지만 자체적인 2차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 2차 도시권의 경우 시군 단위에서는 오산시와 화성시를 교외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시읍면 단위에서는 이보다 넓은 용인시, 평택시 일부까지 포함하는데 이 때는 오산시가 서울 도시권의 3차 중심도시이자 수원 도시권의 하위 중심도시로서 용인시 일부, 평택시 일부, 화성시 일부 지역을 포함하게 된다.

〈표 2-3〉 수원 2차 도시권의 교외지역

2차 중심도시	시·군 단위	시(동부)·읍·면 단위	
	2차 교외지역	3차 중심도시 및 2차 교외지역	3차 교외지역
수원시	오산시	오산시	용인시 일부(남사면) 평택시 일부(서탄면, 진위면) 화성시 일부(동탄면, 양감면)
	화성시	화성시 일부(동부, 마도면, 매송면, 봉담읍,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태안읍, 팔탄면, 향남면)	

출처: 통계청(2007), p.115

〈그림 2-4〉 수원 2차 도시권의 구분 - 시·군 단위(左)와 시·읍·면 단위(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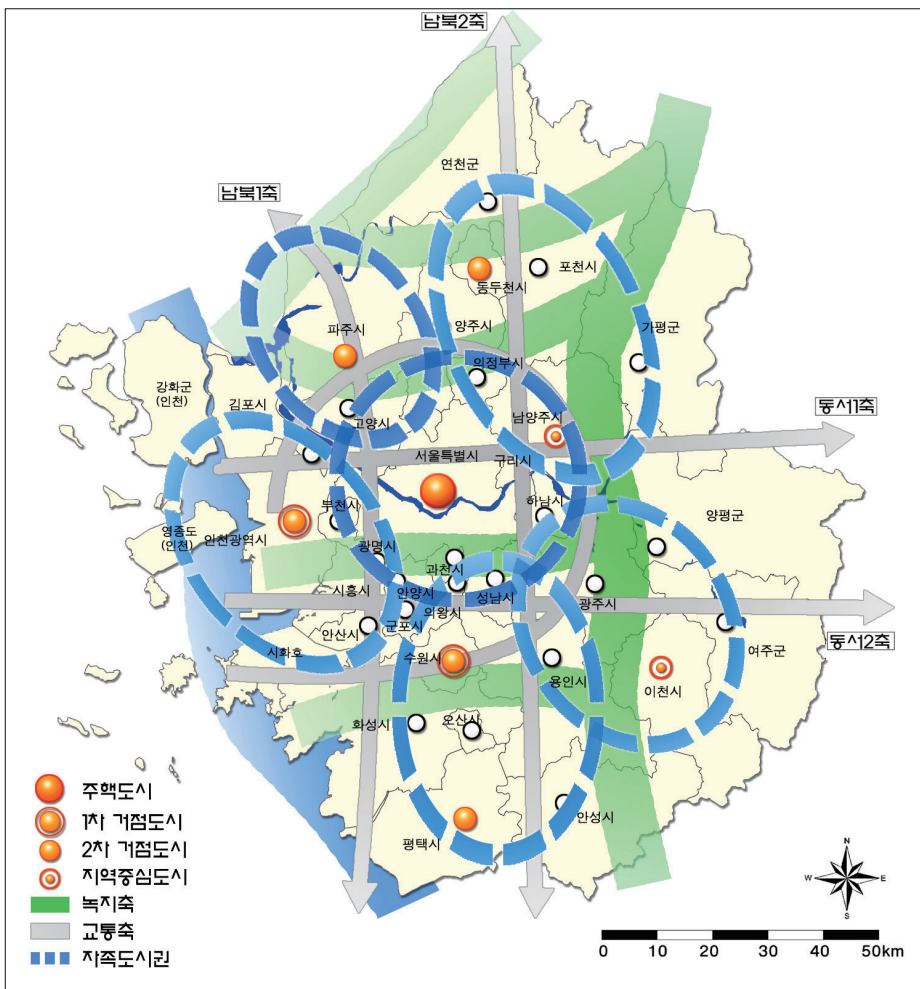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07), p.115

이 외에도 명시적인 도시권 설정의 사례는 아니지만, 수도권이나 경기도 단위의 계획에서 수원과 연계성이 높거나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일종의 권역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들 수 있는데, 2009년 발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서 수원시의 경우 수도권 '남부권역'의 1차 중심도시로서, 교육·행정분야, 전자계열산업 관련업무 및 상업·유통기능을 강화하여 경기 남부지역 지식기반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접지역의 활동거점으로 발전시켜 서울로 유입되는 통행을 분산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 때 수원시가 중심도시가 되는 남부권역에 해당하는 도시들은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이며, 이 중 평택시가 권역의 중심기능을 분담하는 2차 거점도시로 설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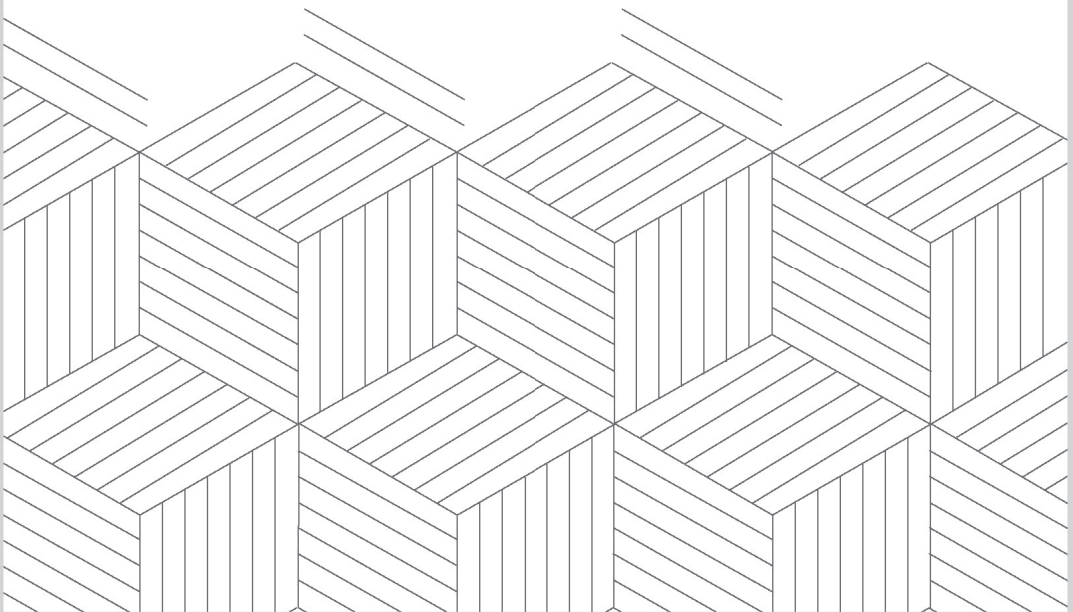
<그림 2-5>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출처: 국토교통부 외(2009), p.29

제3장 수원 도시권의 설정 방법

제1절 도시권 설정 방법 검토
제2절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제3장 수원 도시권의 설정 방법

제1절 도시권 설정 방법 검토

이 절에서는 수원 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에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방법과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통해 수원의 사례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권의 설정은 ① 중심도시 후보의 선정 ② 도시권에 포함되는 주변 지역의 범위 결정 ③ 도시권간의 통합 여부 결정 및 경계 조정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중심도시 선정방법과 주변지역의 도시권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중심도시의 선정

도시권이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후보 중심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권 설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해외의 도시권 설정에서 후보 중심도시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도시지역의 경우 1만 명을, 대도시 지역의 경우 5만 명(미국의 MSA)에서 50만 명(일본 통계국의 도시권)을 1차적인 후보 지역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상주인구 이외에도 영국의 표준대도시노동권(SMLA)과 같이 지역 내 고용인구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인구도 일종의 도시 인구규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표준대도시노동권으로 최종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부의 상주인구 기준 7만 명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규모가 중심도시 선정의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해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선정에는 인구규모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 통계청(2007)은 중심도시의 기준을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동부(洞部)를 포괄하는 시(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의 區部 포함)'로 설정하였는데, 동은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 기준상 도시적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5만 명 이상의 인구규모

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의 설치 기준이 인구 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범수(2007)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도시권 설정에 있어서 중심도시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인구규모 이외에 도시화율과 주간인구 규모를 포함하여 3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절대값이 아니라 3가지 지표 각각에 대해 강원도 전체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평균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는 상대적 비교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3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도시를 1차적으로 중심도시로 선정하였다.

노승철 외(2012)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중심도시 선정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7대 특·광역시 이외에 영향력 지표가 1 이상인 도시를 중심도시의 후보로 구분하였다. 영향력 지표는 각 지역별 유출통행량에서 인접 지역들이 차지하는 통행량 비율을 합산하여 목적지별 유입·유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구해진다.

$$I_j = \sum_{i=1}^n \frac{T_{ij}}{O_i} = \frac{i\text{지역에서 } j\text{지역으로 가는 통근자 수}}{i\text{지역의 총 유출 통행량}}$$

I_j : j 지역의 영향력 지표 (단, $i \neq j$)

영향력 지표가 1 이상이라는 의미는 특정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들의 통근 비중의 합계가 10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 중심도시는 7개 대도시 이외에 32개가 선정되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수원시(1.05)와 화성시(1.55)가 포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후보 중심도시의 1차적인 선정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인구규모이며, 주로 상주인구를 활용하지만 지역의 고용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 중심도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통행량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통행량이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된다는 점과 인구규모가 도시 기능의 종류와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중심도시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도시 상주인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심도시의 기본 전제에는 해당 후보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이라는 것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상 시의 동부가 그 지정기준에서부터 도시화 지역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시권 설정을 위해 활용하는 분석자료인 통행량 데이터,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행 표본조사 자료가 국내의 여건상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분석단위와의 공간적 스케일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부를 포함하는 시 행정구역 전역을 중심도시 후보지역으로 선정한다. 다만 통계청(2007)의 읍·면·동 단위 분석

과 같이 그 설정단위를 읍·면·동으로 하는 경우, 중심도시의 대상지역 역시 시의 동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도시권 설정의 기준 및 지표

도시권의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특성과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지역의 도시권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지표를 이용한 방식과 군집분석, 인자분석, 사회연결망분석 등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주로 통근율 등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연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결정하는 기준 값만 결정하면 비교적 쉽게 권역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아직까지 적절한 기준값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기준값이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임석희, 2017; 노승철 외, 2012). 마찬가지로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분석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도시권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시권 설정의 방법으로서 지표를 이용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지표는 일반적으로 크게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과 ‘주변부의 도시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통근율과 역통근율 등 통행관련 지표와 간선교통망, 시외버스 운행횟수 등의 연결성에 관한 지표, 그리고 공간적 연결성 등의 위치적 속성 등이 주로 활용되며, ‘주변부의 도시성’은 인구밀도, 비농업인구 비율, 토지이용 현황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 주변부의 도시성에 관한 지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을 보조하는 지표로 대부분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주변부의 도시성에 관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이라는 기능지역의 관점에서만 도시권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표 3-1〉 주변지역의 도시성 및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관련 지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부의 도시성
· 중심도시와의 통근율, 통근자 수	· 2,3차 산업 종사자율
· 중심도시 취업자 중 단위지역 취업자 점유율	· 비농업 가구 비율
· 주당 중심도시로의 출입횟수	· 전업농가비율
· 중심도시로의 1일 통행인구 비율, 편도 통근시간	· 일정기간 인구 증가율
· 중심도시 일반버스의 시외연장 운행대수	· 인구밀도
· 중심도시 통과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의 연계 여부	· 전, 답 지가 비율
· 중심도시와의 연접 여부	·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 중심도시로의 구매행위 여부	· 농지전용 비율
	· 항공사진에 의한 시가지화 지역 판독 가능여부
	· 전월세 등 임대가구 비율
	· 건축허가 면적
	· 공동주택비율

출처: 권용우(1999), 대도시권 설정의 필요성과 설정기준 대안

〈표 3-2〉 국내외 도시권 설정기준 관련연구 비교

연구명	중심도시/배후지역 선정기준	대상	행정단위
강성식(2013)	통근통학 통행자료, 인구이동자료의 내외부	전국	시군구
통계청(2007)	통근 통행비율, 역통근 통행비율	전국	시군구/읍면동
장환영 외(2012)	통근통학 통행량, 인구전출입자수, 화물물동량의 비중	대도시권	시군구
권창기 외(2007)	직업의존도, 직업점유율, 통근 통행량의 비중	대도시권	시군구
국토해양부(2010)	지리적 인접성, 연담성, 통근율, 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률	대도시권	시군구
미국	통근 통행량	-	county
캐나다	통근 통행량, 역통근 통행량, 공간적 연접성	-	municipality
일본	통근 통행량, 고용인구비율, 비농업부문 종사자, 야간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	-	시정촌

출처: 한상진 외(2014), p.140

권창기·정현욱(2007)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조사 자료인 통근통행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권의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 때 도시권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으로 ‘직업의존도’(JDR, Job Dependency Ratio)와 ‘직업점유율’(JOR, Job Occupancy Ratio), ‘통근량

의 비중(VI, Volume of exchange Index)의 3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직업의존도는 통근율로 설명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총취업자(총출발자) 중 중심도시로 출근하는 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을 도시권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JDR_i^t = W_{ij}^t / \sum W_i^t$$

JDR_i^t : t시점 i지역의 직업의존도

W_{ij}^t : t시점 i지역에서 j지역(중심도시)으로 통근하는 통근자수

$\sum W_i^t$: t시점 i지역의 총취업자수(출발자수)

직업점유율은 주변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자수) 중 중심도시 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주변지역의 직업수로 주변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손실지표에 해당한다. 직업점유율 역시 5% 이상을 도시권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JOR_i^t = E_{ji}^t / \sum E_i^t$$

JOR_i^t : t시점 i지역의 직업점유율

E_{ji}^t : t시점 j지역(중심도시)에서 i지역(주변지역)으로 통근하는 통근자수

$\sum E_i^t$: t시점 i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자수)

통근량의 비중은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수와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유입되는 통근수의 합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발생하는 전체 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역시 5% 이상을 도시권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VI_i^t = (W_{ij}^t + E_{ji}^t) / (\sum W_{ij}^t + \sum E_{ji}^t)$$

권창기·정현욱(2007)은 이상의 3가지 지표 기준을 적용해 이 중 2가지 지표 이상에서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을 최종적으로 중심도시의 도시권으로 포함시켰다. 노승철 외(2012)의 경우 도시권 설정의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해 통근통행권과 일상통행권, 주거이동권의 3가지 권역을 각각 설정하였는데, 이 중 지표를 이용한 방식으로 설정한 통근통행권의 경우 권창기·정현욱(2007)의 지표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통계청(2007)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도시권을 획정하였는데, 이 때 도시권에 포함되는 교외지역의 설정 기준은 통근율이나 역통근율이 일정한 값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과, 통근율이나 통근율+역통근율이 일정한 값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였다. 도시권 획정의 하위 지역구분에 대한 기준값으로 통근율과 역통근율의 경우에는 2.5%, 5%, 10% 이상, 통근율+역통근율의 경우에는 5%, 10%, 20% 이상을 각각 적용한 결과 통근율과 역통근율 5% 또는 통근율+역통근율 10%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한 도시권 설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3〉 통계청(2007)의 도시권 획정 기준 설정 결과

구분	획정의 기본공간단위 : 시·군	획정의 기본공간단위 : 시(洞部)·읍·면
중심도시 정의	상주인구 5만명 이상인 동부(洞部)를 포괄하는 시(특별시, 광역시의 區部 포함)	상주인구 5만명 이상인 동부(洞部)
교외지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5% 이상이거나 역통근율 5% 이상인 주변지역 - 하나의 주변지역이 2개 이상의 중심도시에 대해 교외지역이 되는 경우 통근율+역통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중심도시의 도시권에 포함시킴 	
도시권 내부 계층체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도시 A의 교외지역 B와 C중에서 C에 대해 교외지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D가 있을 경우, D는 A가 속한 도시권인 X의 교외지역으로 편입되고 C와 D는 X의 2차 도시권인 Y로 설정 - 이 경우, C는 X의 2차 중심도시가 되고, D는 X의 2차 교외지역으로 설정. X의 기존 교외지역인 B는 X의 1차 교외지역으로 설정 -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3차 중심도시, 3차 교외지역, 3차 도시권도 설정됨 	
공간적 연결성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지역 설정을 위한 통근 및 역통근 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동일 도시권 내에서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변지역으로 둘러싸인 주변지역은 도시권에 포함시킴 - 교외지역 설정을 위한 통근 및 역통근 기준을 만족하지만 비지적으로 위치해 있는 주변지역(단, 도서지역 예외)은 도시권에 포함시키지 않음 	
도시권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 중심도시 동부(洞部)인구가 100만이상인 도시권 - 도시권 : 중심도시 동부(洞部)인구가 5만이상인 도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 중심도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권 - 도시권 : 중심도시 인구가 5만이상인 도시권

출처: 통계청(2007), p.109

권창기·정현욱(2007)이 제시한 JDR, JOR과 통계청(2007)이 사용한 통근율과 역통근율은 모두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행의 비율과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역통근통행의 비율의 의미하며, 그 기준값 역시 5%로 같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표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 지표에 해당하는 ‘통근+역통근’의 활용에 있어, 권창기·정현욱은 지역 내 전체 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한 반면, 통계청은 개별지역 별로 단순 비율의 합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권창기·정현욱이 이 지표를 앞서의 통근, 역통근과 동일한 위상으로 적용한 반면 통계청은 한 주변지역이 여러 중심도시의 도시권에 중첩될 때 이를 조정하는 부가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2절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1. 수원 도시권 설정 방식의 특징

여기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원 도시권 설정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자체가 도시권 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나 기준의 모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도시공간 구조와 주변 도시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방법론의 실질적인 적용과 도출된 결과의 해석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권 설정의 기본적인 절차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일반적인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수원시라고 하는 사례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방식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첫째, 후보 중심도시 선정에 관한 과정을 생략하였다. 일반적인 도시권 확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심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심도시 후보를 선정하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도시권의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이미 수원을 중심도시로 하는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도시의 선정과정은 불필요한 절차이다. 또한 중심도시의 선정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도시 상주인구의 측면에서 수원시는 126만의 인구를 가진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수원시가 후보 중심도시로 선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중심도시의 선정과정을 생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 설정에 활용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지표유형 중 주변지역의 도시성 지표를 제외한 연계성 지표만을 활용하였다. 이는 최근의 연구동향에서 주변지역의 도시성 보다는 지역 간 연계성을 중점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수원 주변지역이 모두 행정구역상 '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미 수도권 광역화의 영향으로 과거 농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대부분 사실상의 도시 주거지역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비농업인구 비율과 도시용지 비율 등 주변지역의 도시성에 대한 기준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셋째, 공간적 분석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분석의 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도시권 확정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이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행 자료가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된다는 점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통계청(2007)과 같이 발주기관이 통계조사의 주관기관으로 내부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

이 시·군·구를 설정의 공간적 단위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전국 혹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수원시 도시권의 설정에 있어서 시·군·구 단위의 분석은 사실상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읍·면·동 단위로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자료 역시 읍·면·동 단위의 통행자료를 제공하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넷째, 수원 도시권을 절대도시권으로 설정하고 타 도시권과의 영역 조정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2차 도시권의 존재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절대도시권은 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가 기준값이 이상인 지역을 모두 도시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변지역이 여러 도시권에 속할 경우 보다 연계성이 높은 도시권에만 할당시키는 상대도시권과 구분된다. 일반적인 도시권 설정의 과정은 마지막 절차에서 도시권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상대도시권이지만, 수원시의 경우 주변지역이 대부분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은 수도권 도시라는 점에서 상대도시권을 적용할 경우 수원시와 주변 지역간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다. 앞서 검토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수원 도시권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의 광역대도시권에 포함된 하위도시권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상대도시권 개념을 적용할 경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수원 도시권 자체의 기능적 영향권의 범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절대도시권이자 1차 도시권으로서의 수원 도시권을 설정하였다.

2. 도시권 설정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기능적 측면에서의 도시간 연계성을 측정하였다.

도시간의 연계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간의 다양한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외의 연구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역간의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통행량을 분석하는 데 활용가능한 자료는 크게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와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들 수 있는데, 각 자료는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전국 단위의 목적지 통행량을

제공하지만, 시·군·구 단위로만 자료가 제공되며 통행목적으로 통근·통학 통행량만을 조사한다. 이에 반해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의 목적지 통행을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여행목적과 수단별 통행량도 포함되어 있지만, 광역권을 넘어서는 지역간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통행량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통행 역시 조사결과에 포함된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은 읍·면·동 이하의 보다 구체적인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분석자료로 둘 중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선택하였다.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서울, 인천에서의 출발 교통량만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빈번한 통행이 발생하는 충청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 자체가 수원시의 도시권 범위 설정에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수원의 연계성은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

분석자료의 범위는 2006년에 실시된 <2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와 2016년에 실시된 <4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이용해 각 시기별 도시권의 획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그 변화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다만, 2006년 자료의 경우 전수화된 수단 O/D자료를 활용한 반면, 2016년 자료의 경우 연구 시점까지 전수화 수단 O/D 자료의 출발지/목적지가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되어 있어 표본조사의 원시자료를 직접 사용하였다. 2006년 <2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3.1%의 표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는 1.17% 조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자료 해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2) 분석 지표

수원과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권창기·정현욱(2007)과 노승철 외(2012)가 사용한 직업의존도(JDR)와 직업점유율(JOR), 통근량의 비중(VI)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세 지표를 활용해 수원 도시권 중 '도시 통근권'을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분석에 활용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가 통행목적에 대한 데이터를

2) 통계청(2007)의 읍·면·동 단위 분석결과에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2차 도시권까지 고려하더라도 평택시 북부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p.24 참조).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연계성 조건을 최종적인 도시권 설정 결과에 적용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일부 지역이 수원 도시권에 1차적으로 포함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석자료의 범위가 수도권에 한정되더라도 수원 도시권 설정의 최종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공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도시 업무권’과 ‘도시 일상생활권’ 역시 각각 설정하였다. 즉 도시 기능의 공간적 범위를 ‘통근(고용)’과 ‘업무’, ‘일상생활’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은 시기 각각의 도시권을 파악하고 각 도시권 간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도시 통근권’과 ‘도시 업무권’, ‘도시 일상생활권’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는데, 개인별 통행데이터에서 통근권의 설정에는 통행목적이 ‘출근’인 경우만을, 업무권은 ‘업무’인 경우를, 일상생활권은 ‘쇼핑’ 또는 ‘여가’ 관련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³⁾. 이때 도시 업무권과 도시 일상생활권 분석에 활용된 지표를 각각 업무의존도(BDR, Business Dependency Ratio Index), 일상생활의존도(DDR, Daily-life Dependency Ratio Index), 업무점유율(BOR, Business Occupancy Ratio Index), 일상생활점유율(DOR, Daily-life Occupancy Ratio Index)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도시권 설정에 활용된 지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JDR_i^t (BDR_i^t, DDR_i^t) = W_{is}^t / \sum W_i^t$$

JDR_i^t : t시점 i지역의 직업(업무, 일상생활) 의존도

W_{is}^t : t시점 i지역에서 수원시로 통행하는 해당목적 통행자수

$\sum W_i^t$: t시점 i지역의 총취업자수(출발자수) (총업무통행자수, 총일상통행자수)

$$JOR_i^t (BOR_i^t, DOR_i^t) = E_{si}^t / \sum E_i^t$$

JOR_i^t : t시점 i지역의 직업(업무, 일상생활) 점유율

E_{si}^t : t시점 수원시에서 i지역(주변지역)으로 통행하는 해당목적 통행자수

$\sum E_i^t$: t시점 i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자수)

$$VI_i^t (BVI_i^t, DVI_i^t) = (W_{is}^t + E_{si}^t) / (\sum W_{is}^t + \sum E_{si}^t)$$

VI_i^t : t시점 수원시와 i지역간의 해당목적 통행 및 역통행량의 비율

3) 각각에 해당하는 통행목적의 코드 번호는 다음과 같다.

- 통근권 : 2006년 3(출근) / 2016년 4(출근)
- 업무권 : 2006년 6(업무) / 2016년 7(업무)
- 일상생활권 : 2006년 8(쇼핑), 9(여가) / 2016년 8(쇼핑), 9(여가/운동/관광/레저), 10(외식)

3) 기준과 절차

수원시의 경우 행정구역 내 전체 지역이 동부(洞部)이기 때문에, 도시권 설정을 위한 중심 지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통행목적별 도시권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각 지표별 충족 기준은 의존도(JDR, BDR, DDR)와 점유율(JOR, BOR, DOR)의 경우에는 5%(0.0500) 이상, 통행량 비중(VI, BVI, DVI)의 경우에는 1%(0.050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통행량 비중을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5% 대신 1%로 적용한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의 공간적 단위가 선행연구들보다 세분화된 읍·면·동 단위이며, 시·군 단위에 비해 읍·면·동 단위를 적용할 때 전체 대상지역의 수가 10~20배 늘어난다 점을 고려한 것이다⁴⁾.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충족할 때 해당 지역을 기능별 수원 도시권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정된 도시권에 대해서 공간적 연결성에 따른 조정을 실시하였는데, 2가지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지역은 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반대로 지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은 도시권에 포함시켜 최종적인 도시권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적 연결성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도시권에 포함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이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에 완전히 둘러싸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비교적 소규모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를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권에 포함'(행정경계의 2/3 이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이 모두 수원 도시권에 포함)된 경우도 도시권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표 3-4〉 수원 도시권 설정 방법

	연계성 지표	기준	설정방법
1단계	의존도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해당목적 통행의존도 5% 이상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점유율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해당목적 통행점유율 5% 이상	
	통행량 비중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해당목적 통행량 비중 1% 이상	
↓			
	연접성 지표	기준	설정방법
2단계	공간적 연접성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외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에 둘러싸여 있거나, 대부분의 행정경계를 도시권에 포함된 지역과 이르고 있는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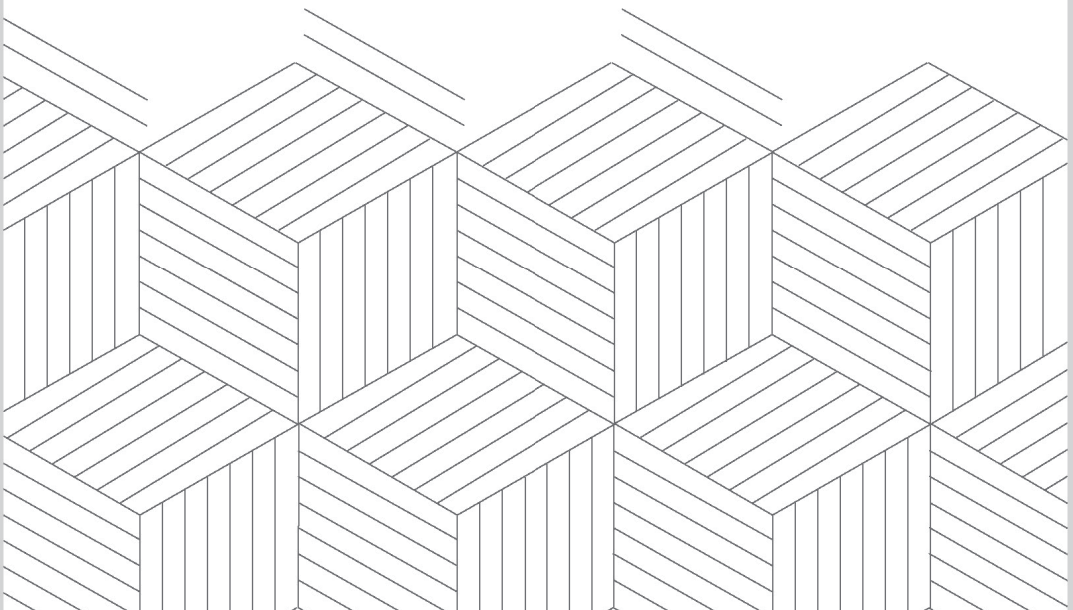
4) 연구 진행과정에서 통행량 비중 지표를 5%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6개 지표(2006년 VI, BVI, DVI, 2016년 VI, BVI, DVI) 전체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시·군에 비해 읍·면·동의 경우 단위지역의 수가 약 18배 정도로 많아지지만, 통행량 비중 지표가 중심도시-주변도시 간에 발생하는 전체 통행량에서 해당 지역의 점유율이라는 일종의 양적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제4장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징

제1절 200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제2절 201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제3절 수원 도시권의 변화양상과 특징



제4장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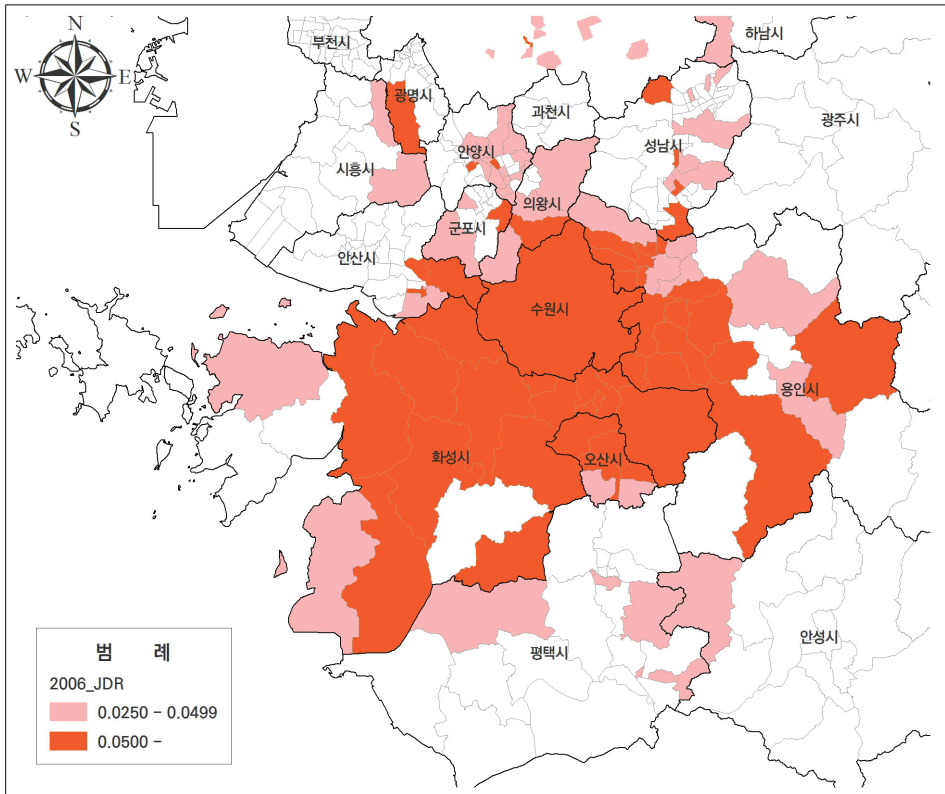
제1절 200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1. 통근권

통근권 설정의 첫 번째 지표인 직업의존도(JDR)는 해당 주변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 중 수원으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원으로의 통근율에 해당한다. JDR의 경우 총 53개의 읍·면·동 지역이 기준치인 5%(0.0500)를 상회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대부분 수원시보다 남쪽에 해당하는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용인시가 관내 29개 읍·면·동 지역 중 17개가 포함되어 수적으로는 가장 많지만 화성시가 20개 지역 중 15개, 오산시 6개 지역 중 4개로 비율상으로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JDR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산시 세마동으로 0.3748이며, 다음으로 화성시 반월동 0.3038,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564 등의 순이다. 수원시와 직접적으로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 중에는 의왕시 부곡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기준치 이상에 해당한다.

직업점유율(JOR)은 해당 지역으로 통근하는 전체 인구 중 수원시에서 오는 인구의 비율로, 수원에서의 역통근율을 의미하는데, 총 94개 지역이 기준치인 5%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JDR에 비해 해당하는 지역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은 수원시가 주변의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주변지역의 통근 유입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JOR 분포는 JDR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더 넓게 확산되어 있다. 화성시는 서신면을 제외한 전체 지역의 JOR 값이 0.05를 상회하고 있으며, 오산시 역시 6개 읍·면·동 전체가 포함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11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수원 거주민의 서울 통근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안양시와 의왕시 등 수원과 인접한 북쪽 지역도 수원시민의 주요한 통근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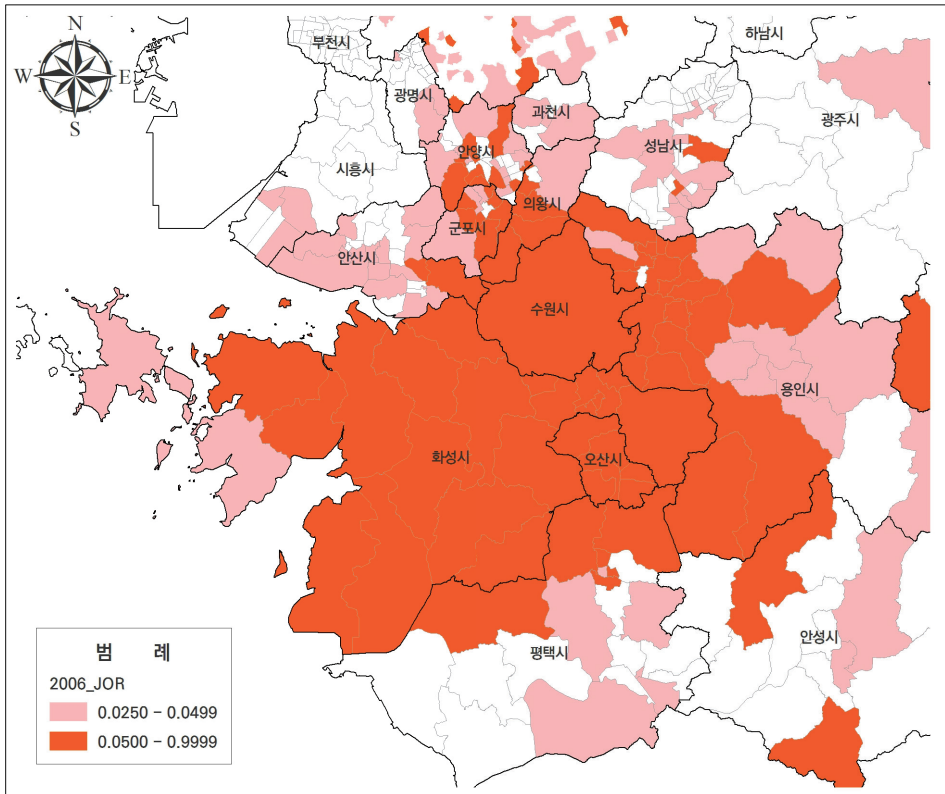
〈그림 4-1〉 직업의존도 분포



서울시	중구 필동 / 동작구 사당2동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 분당구 수내2동 정자3동 이매2동 구미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동안구 부흥동
광명시	학온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본오2동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군포시	군포1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양지면 역삼동 /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여정동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여주군	신북면
양평군	지제면

주: JDR \geq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그림 4-2〉 직업점유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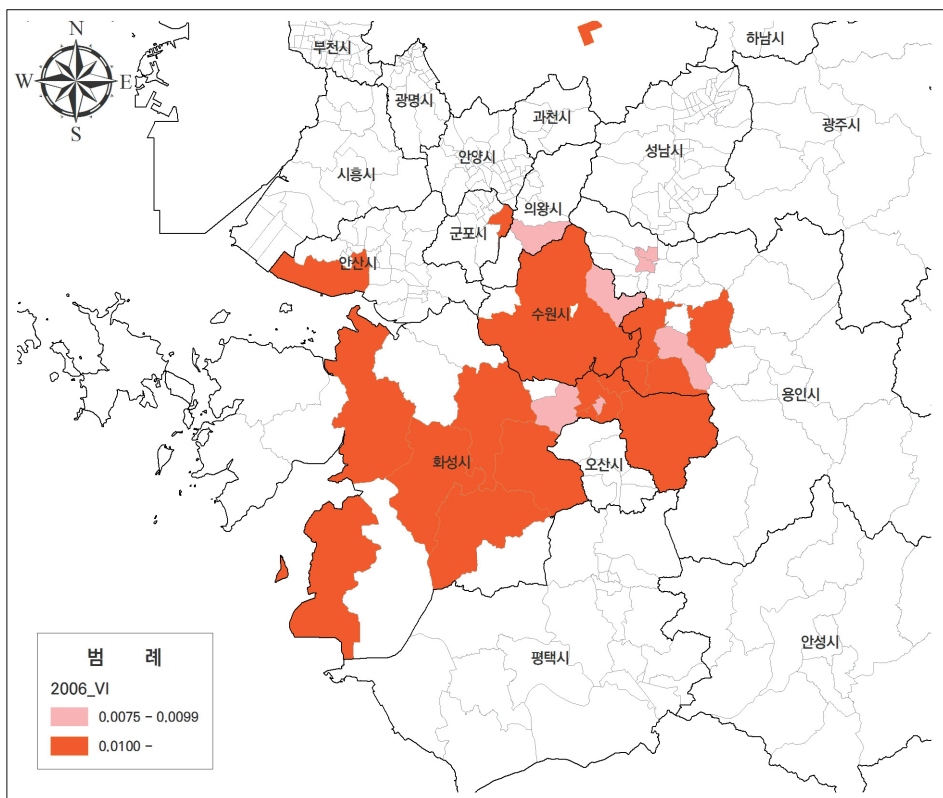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 성북구 정릉3동 / 서대문구 북아현3동 / 강서구 화곡2동 / 구로구 구로1동 / 금천구 시흥3동 / 영등포구 대림3동 / 동작구 흑석3동 서당5동 / 관악구 남현동 / 강남구 대치3동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야탑2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6동 안양8동 안양9동 / 동안구 비산3동 평촌동 호계2동 갈산동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청북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반월동	동두천시	중앙동
오산시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군포시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남사면 이동면 /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어정동 보정동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이천시	장호원읍 마장면 모가면	안성시	서운면 양성면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여주군	대신면		

주: JO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통근량의 비중(VI)은 수원과 관련된 전체 통근통행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앞서 두 지표가 비율적 측면에서 연계성을 의미한다면, 해당지역과 수원의 관계를 양적 측면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VI가 1% 이상인 지역은 총 18개 지역이며, 이 중 화성시가 10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수원과 화성시 지역간의 통행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 봉담읍으로 0.0312이며, 다음으로 화성시 병점1동 0.0224, 화성시 정남면 0.0216,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208의 순이다.

〈그림 4-3〉 통근통행량 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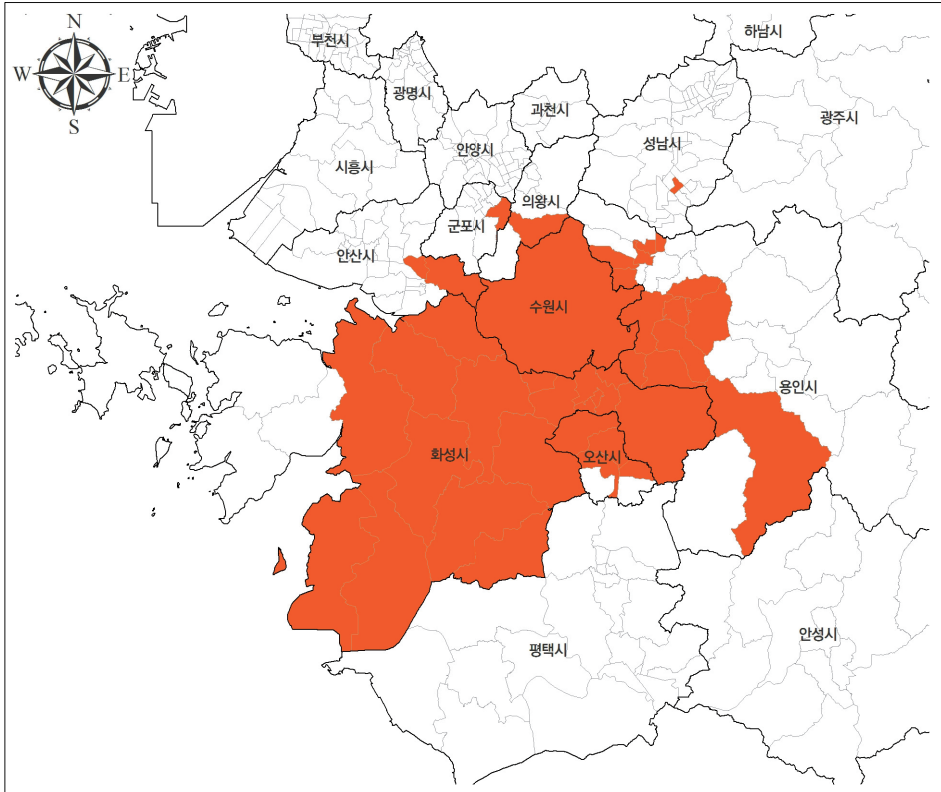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강남구 역삼1동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군포시	군포1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 어정동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팔탄면 향남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주: VI ≥ 1%(0.01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이와 같은 JDR, JOR, VI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 지표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4>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수원시의 도시 통근권에 포함된 지역과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게 되는데, 성남시 분당구 수내 2동이 여기에 해당해 도시 통근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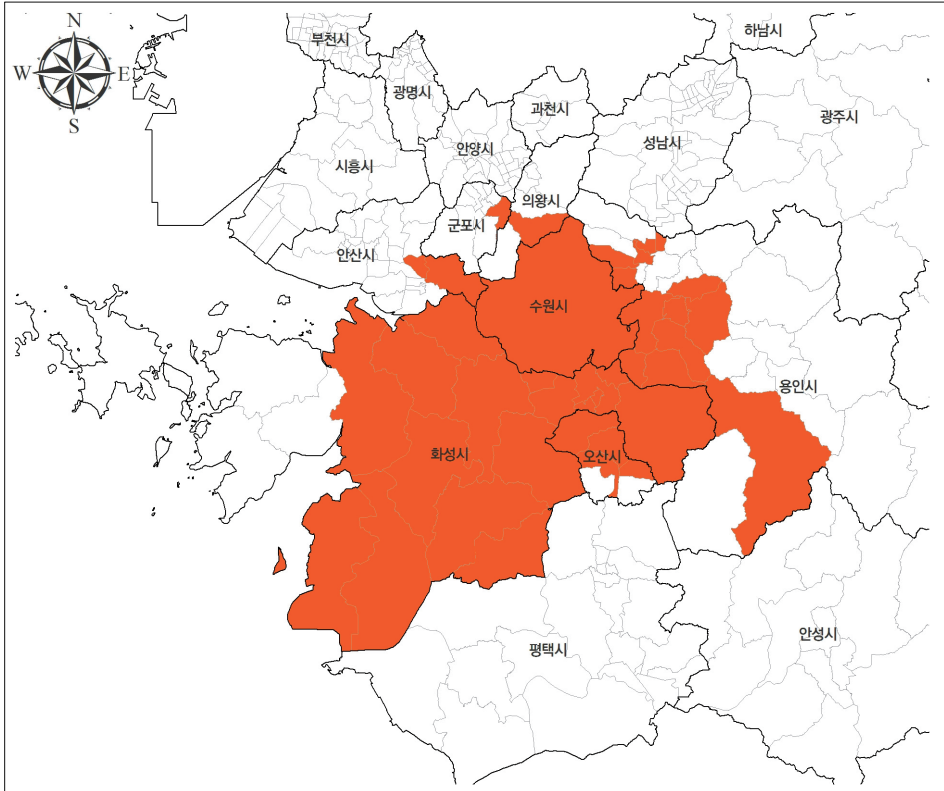
<그림 4-4> 도시 통근권 설정 1차 결과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2006년 기준 수원시의 도시 통근권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이외에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중심으로 총 38개 읍·면·동 지역이 된다. 화성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의 3개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오산시는 남쪽에 위치한 초평동, 대원동 지역을 제외한 4개 동이 포함되었다. 용인시는 수원시 및 화성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서남부 지역이 수원의 통근권에 포함되었다. 이외에 수원시와 접해있는 안산시 단원구 반월동과 의왕시 고천동, 그리고 이 지역과 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일동과 군포시 군포1동이 포함되었다. 이에 반해 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천동은 수원시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근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해당 지역은 왕송저수지,

광고산 등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연결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5〉 도시 통근권 설정 최종 결과



안산시	상록구 일동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군포시	군포1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어정동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상현1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 JDR, JOR, VI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공간적으로 연접한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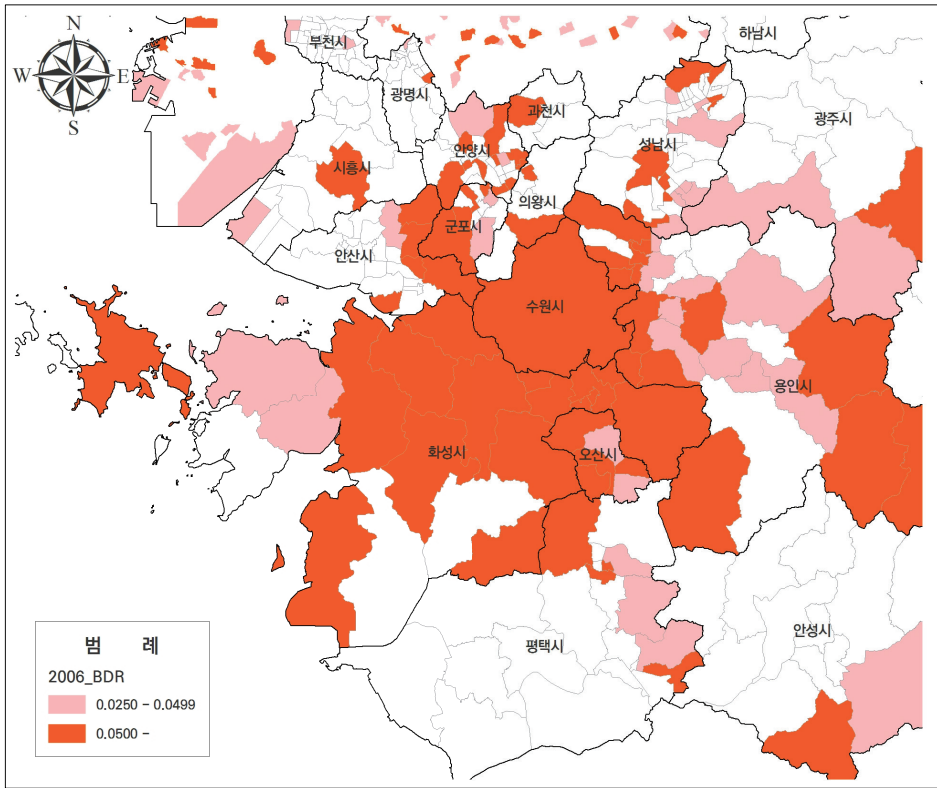
2. 업무권

도시 업무권 설정을 위한 세 가지 지표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업무의존도(BDR)의 경우 직업의존도(JDR)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출발하는 총 업무통행 중 수원시로 향하는 업무통행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총 103개 지역이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지표 중 가장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비정형화된 형태로 공간적으로 산포되어 있는데, 특히 경기도 지역의 경우 수원을 제외한 30개 시·군 중 20개의 시·군이 최소 1개 이상의 해당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치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김포시, 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에서도 BDR이 0.05 이상인 지역이 나타난다. 이는 수원시가 경기도 청 소재지이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업무상 필요로 인해 수원으로 통행할 필요가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이외에도 서울의 여러 지역과 인천의 지역에서도 수원으로의 업무 통행이 상당 비율 이상 존재하고 있다.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체 업무통행에서 수원에서 출발한 업무통행의 비중을 나타내는 업무점유율(BOR)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 보다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데, 형태적으로 수원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사선 형태로 길게 이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기준값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은 총 75개이며, BOR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 병점1동으로 0.4711이며, 다음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9동 0.3538, 화성시 진안동 0.2490,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222,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0.2189 등의 순이다.

업무통근량의 비중(BVI)은 수원과 관련된 전체 업무통행량(수원으로의 유입과 수원에서의 유출의 총합)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원과의 전체 업무통행량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BVI 1% 이상인 지역은 총 12개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수원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읍·면·동이 중심이지만,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화성시 우정읍 등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주변 지역과 독립적으로 수원과 높은 업무관련성을 보인다. BVI가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 병점1동으로 0.0325이며, 다음으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228, 화성시 봉담읍 0.0191, 화성시 진안동 0.0185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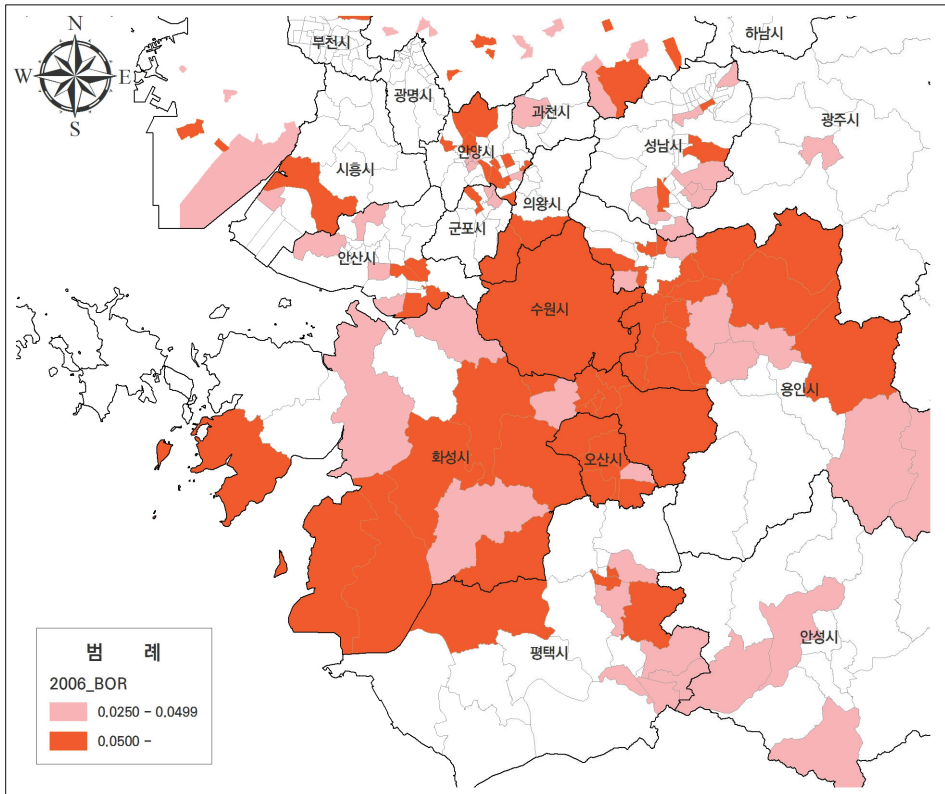
〈그림 4-6〉 업무의존도 분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길음2동 / 은평구 신사1동 / 마포구 합정동 / 구로구 개봉본동 / 동작구 사당3동 신대방2동 / 관악구 봉천5동 봉천9동 신림12동 / 서초구 방배본동 / 강남구 대치2동 / 송파구 가락2동		
인천시	동구 만석동 금창동 / 남구 도화2동 주안3동 / 부평구 부평2동 / 계양구 계산2동 / 서구 석남2동 검단1동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복정동 / 중원구 금광1동 상대원3동 / 분당구 수내1동 정자2동 판교동 금곡2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5동 안양7동 안양9동 / 동안구 비산3동 달안동 관양2동 평촌동 호계1동 갈산동		
광명시	하안3동	평택시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비전2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사2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 / 단원구 대부동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일산동구 장항1동		
과천시	중앙동	남양주시	진건읍 호평동 지금동
오산시	중앙동 남촌동 세마동 초평동	이천시	장호원을 설성면
시흥시	연성동	군포시	산본1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
의왕시	고천동 내손2동	하남시	신장2동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 어정동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안성시	서운면	김포시	고촌면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광주시	실촌읍	양주시	양주1동

주: BD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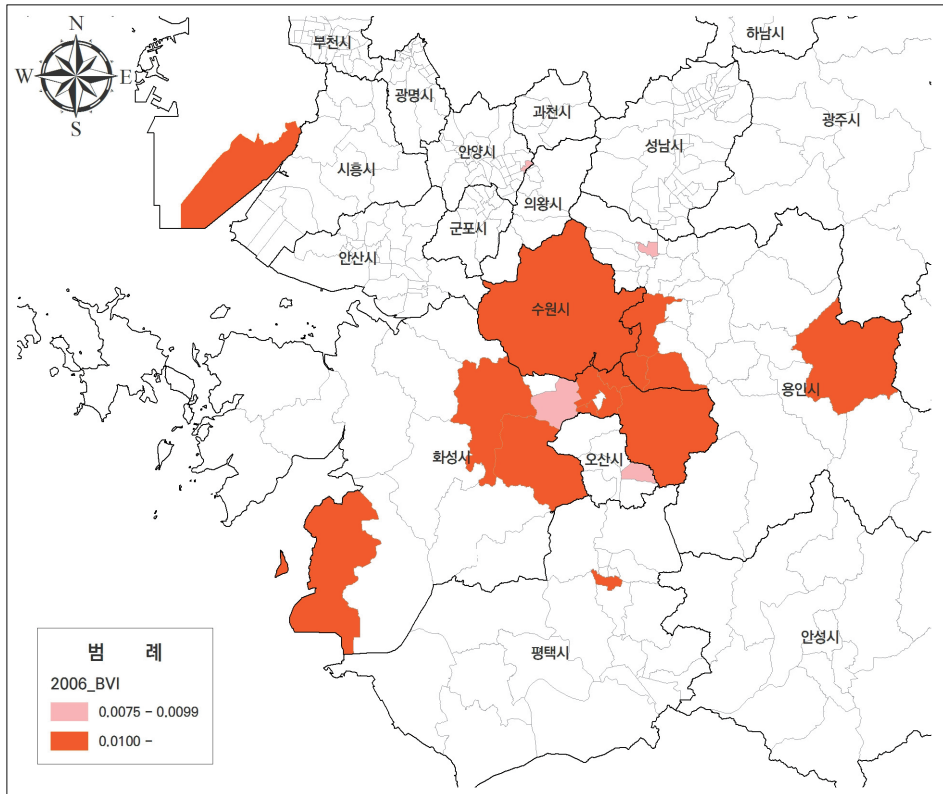
〈그림 4-7〉 업무점유율 분포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 용산구 원효로1동 원효로2동 / 동대문구 청량리2동 / 노원구 상계8동 / 금천구 독산2동 / 관악구 봉천1동 봉천8동 봉천9동 신림5동 / 서초구 내곡동 / 강남구 대치4동 / 송파구 문정2동	
인천시	중구 용유동 / 연수구 옥련1동 동춘3동	
성남시	중원구 중동 / 분당구 정자1동 야탑2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7동 석수1동 석수3동 / 동안구 부흥동 부림동 평촌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평택시 청북면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안산시	상록구 일동 본오1동 이동	구리시 갈매동
오산시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시흥시	군자동	군포시 광정동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하남시 덕풍1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 수지구 풍덕천1동 죽전2동 상현2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주: BO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그림 4-8〉 업무통행량 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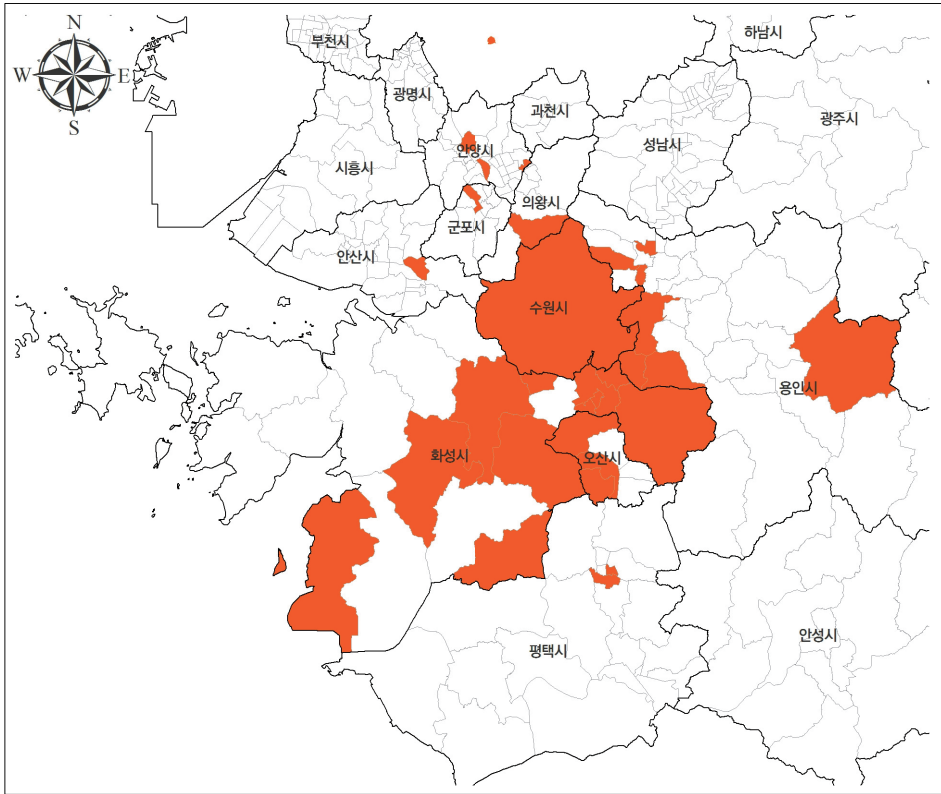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평택시	서정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주: BVI ≥ 1%(0.01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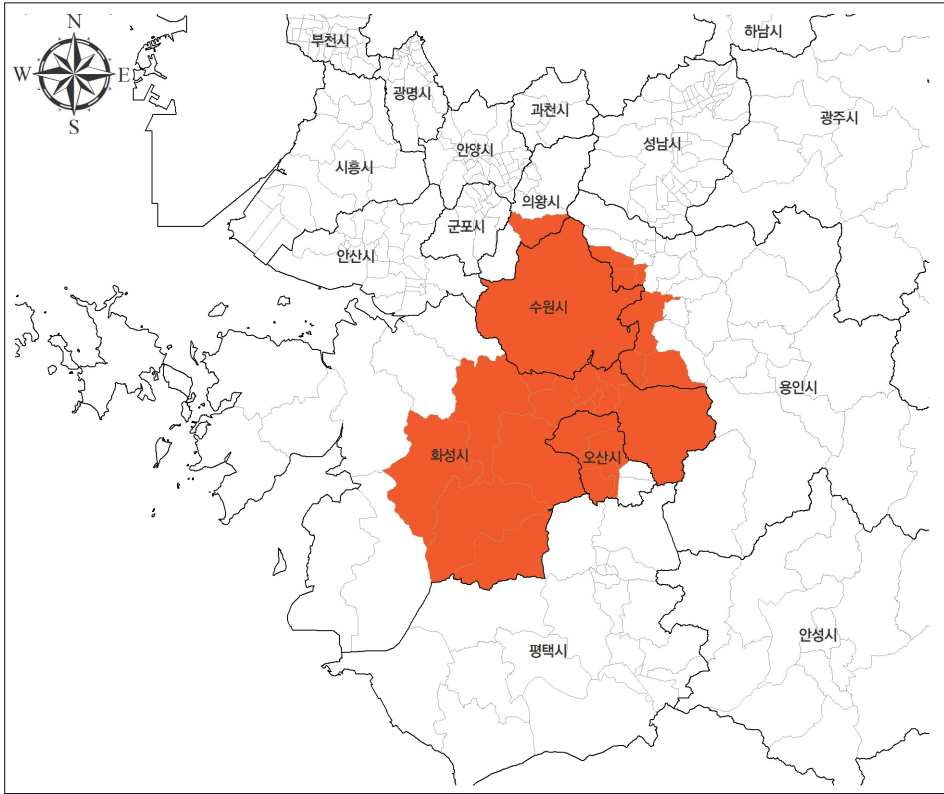
BDR, BOR, BVI 각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 지표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수원의 업무권으로 1차 선정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9〉와 같다. 최종 업무권 설정과정에서 1차적으로 선정된 지역 중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7동, 평촌동과 평택시 서정동, 지산동 등 총 11개 지역이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오산시 신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화성시 화산동과 향남면은 지표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변 지역이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이 수원의 도시 업무권에 포함되면서 최종적인 업무권의 권역으로 추가되었다.

〈그림 4-9〉 도시 업무권 설정 1차 결과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06년 기준 수원시 도시 업무권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이외에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 총 23개 읍·면·동 지역이 된다. 이는 도시 통근권과 비교할 때 동서 방향이 대폭 축소되어 나타난다. 화성시의 경우 시 전체를 동서로 분할할 때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만 수원의 업무권에 포함되며, 용인시는 수원시와 행정경계를 접하고 있는 기흥구와 수지구의 지역만이 포함된다. 타 시·군에서는 수원에 접해있는 의왕시 고천동 지역만 유일하게 수원의 업무권에 포함된다.

〈그림 4-10〉 도시 업무권 설정 결과



오산시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 / 수지구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팔탄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 BDR, BOR, BVI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공간적으로 연결한 지역을 구분

3. 일상생활권

쇼핑과 여가 목적의 통행을 바탕으로 한 일상생활권의 설정을 위해 우선 세 가지 지표 중 주변지역의 총 일상통행 유출 중 수원으로 향하는 통행의 비율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의존도(DDR)를 먼저 살펴보면, 총 51개 지역이 기준값 이상을 만족하고 있으며, 용인시가 14개 지역, 12개 지역으로 두 시·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DDR이 높은 지역은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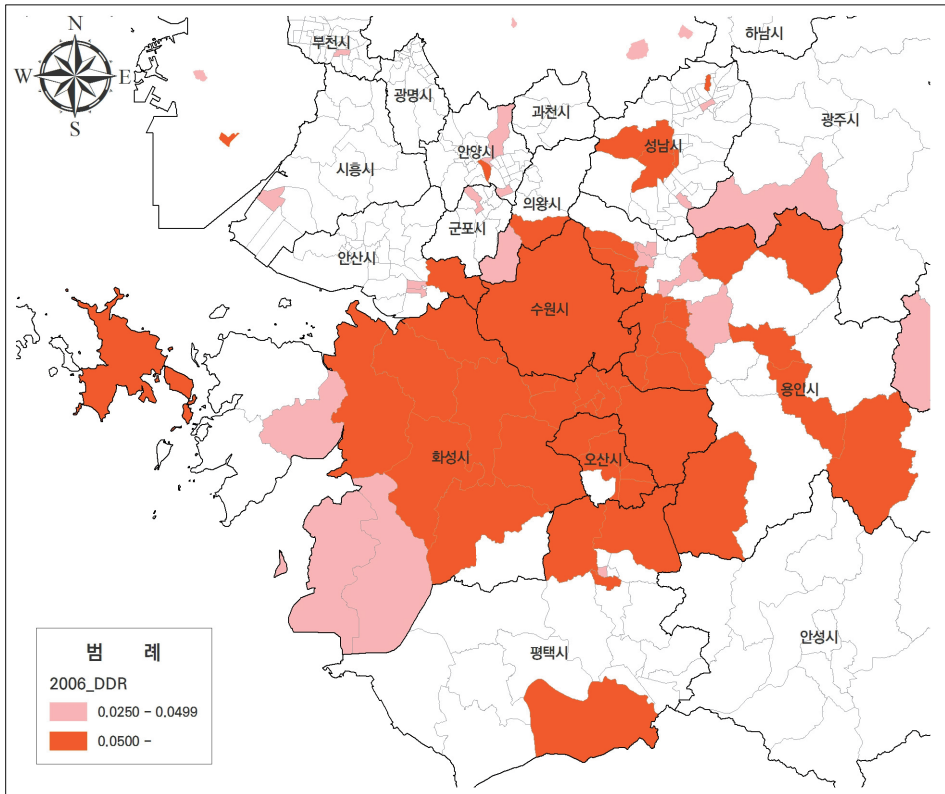
시 화산동으로 0.4687이며, 다음으로 화성시 기배동 0.4543, 화성시 동탄면 0.4522, 화성시 매송면 0.4090 등 화성시 지역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화성시 지역에 2006년까지 대규모 상업 및 위락시설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쇼핑 및 여가통행이 수원지역으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지역으로 유입되는 일상통행 중 수원에서 출발하는 통행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상생활 의존도(DOR) 지표의 경우에는 총 36개 지역이 기준값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원을 기준으로 북서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분포 형태를 보인다. 화성시가 10개 지역, 용인시가 7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서의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특정 시·군에 집중된 경향은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시·군은 1개 내외의 지역만이 포함된다. DOR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특이하게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남시 감북동으로 무려 0.8613이며, 다음으로는 화성시 팔탄면 0.7281, 오산시 세마동 0.2524, 화성시 매송면 0.250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수원과 관련된 전체 일상통행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일상생활통행량 비중 분포(DVI)의 경우에는 총 20개 지역이 0.0100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용인시와 화성시를 중심으로 수원 남쪽 지역에서 양 갈래로 뻗어가는 분포형태를 보인다. 가장 DVI 값이 높은 지역은 DOR과 마찬가지로 하남시 감북동으로 0.0571인데, 이는 높은 DOR 값과 같이 고려할 때 수원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쇼핑 또는 여가 목적의 통행이 상당수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현재까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있고 쇼핑과 여가 목적의 통행이 특별히 발생할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로 추정된다.

하남시 감북동을 제외할 경우 화성시 봉담읍이 0.0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화성시 병점1동 0.037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36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336의 순으로 나타난다. 동탄면 0.3646, 화성시 기배동 0.3375, 화성시 화산동 0.3184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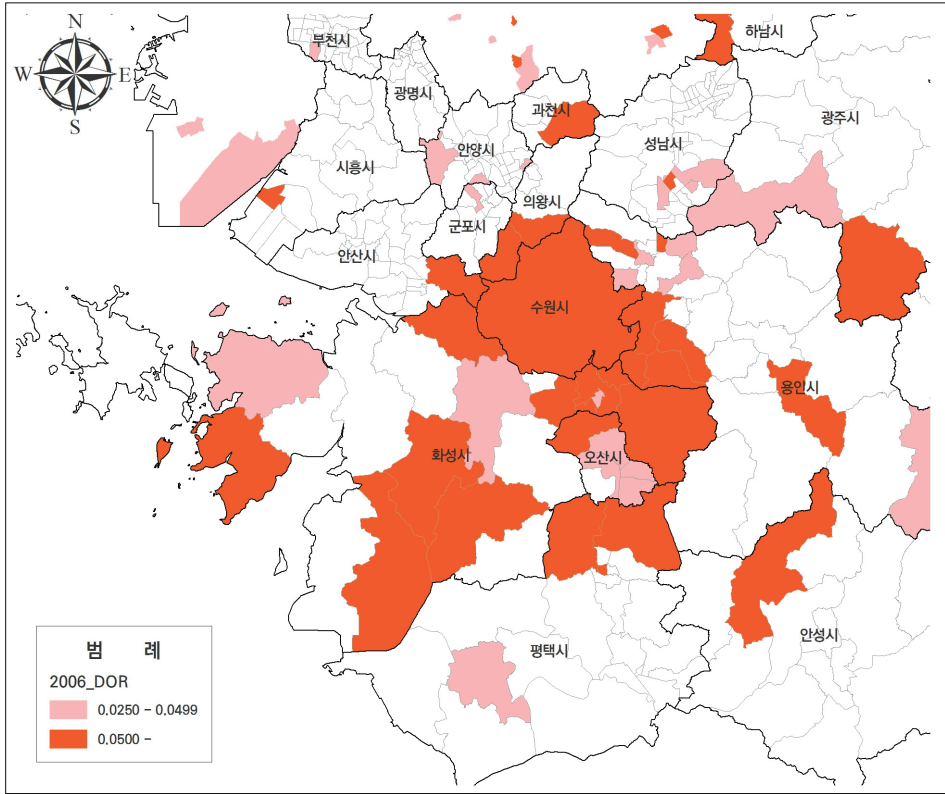
〈그림 4-11〉 생활의존도 분포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 성동구 왕십리1동 / 은평구 수색동 / 송파구 풍납2동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시흥동 / 분당구 이매2동 판교동 /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평택시	평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 단원구 대부동
남양주시	양정동
오산시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남사면 원삼면 유림동 동부동 /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 수지구 신봉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향남면 정남면 동탄면 남양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주: DDR \geq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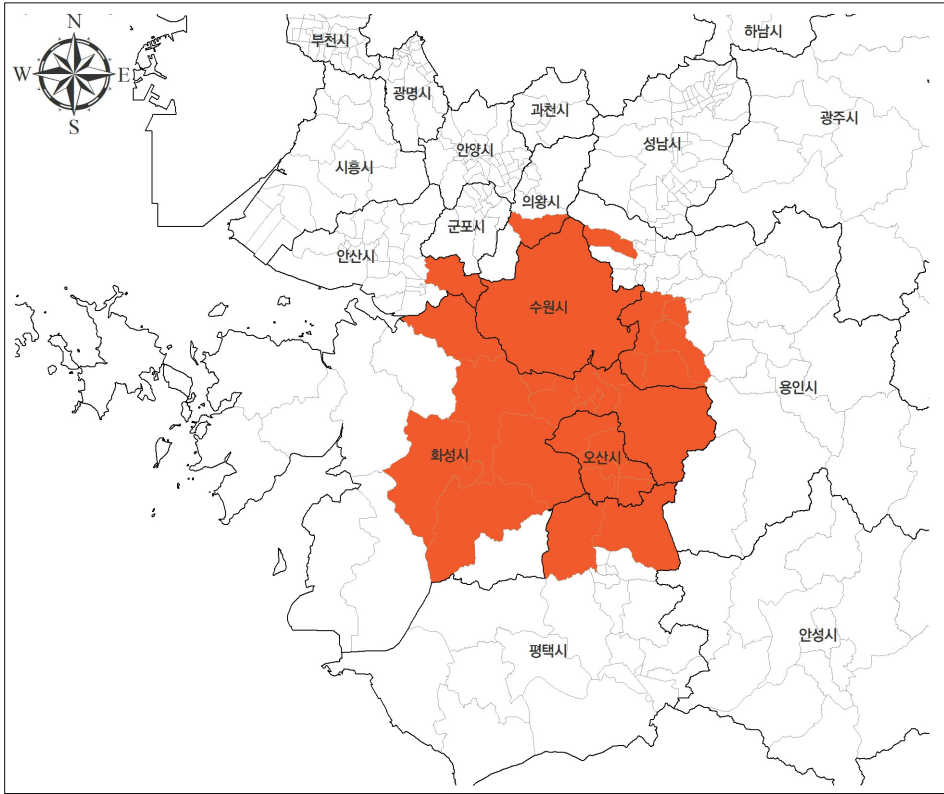
〈그림 4-12〉 생활점유율 분포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 동작구 흑석3동 / 관악구 봉천11동 / 송파구 가락1동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신장2동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과천시	문원동
구리시	교문2동
오산시	세마동
시흥시	정왕4동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하남시	감북동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 기흥구 신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 수지구 신봉동 죽전2동
파주시	월롱면
안성시	양성면
화성시	매송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화산동
광주시	도척면

주: DO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그림 4-15〉 일상생활권 설정 결과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 수지구 신봉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팔탄면 향남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 DDR, DOR, DVI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며, 공간적으로 연결한 지역을 구분

4.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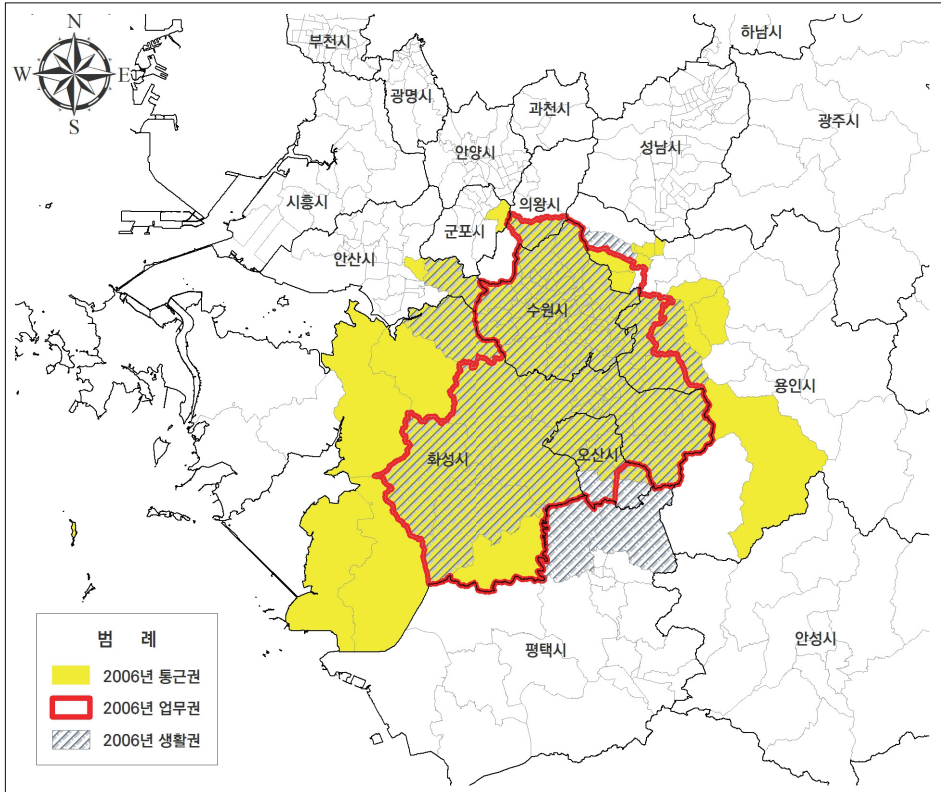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2006년 기준 수원 도시권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유형의 도시권을 동시에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16〉과 같이 나타난다. 수원 도시권의 전체적인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와 오산시, 용인시를 중심으로 안산시, 의왕시, 평택시까지 총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대부분 수원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폭넓게 퍼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행정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지역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원 도시권은 수원 이남의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원시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서울시에 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강한 기능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과의 연계성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시 기능별 도시권의 분포를 보면 공간적으로는 통근권이 세 권역 중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데, 특히 다른 권역에 비해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확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업무권과 생활권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생활권이 각 방향으로 한 개 읍·면·동 정도의 공간적 단위가 더 확장된 형태를 취한다.

3개의 권역에 모두 포함되는 ‘동일도시권’, 즉 통근, 업무, 일상생활 등 주요 기능과 활동 모두가 수원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실상 수원과 도시 활동을 같이하는 지역은 화성시의 동부 지역과 오산시의 북부 지역, 그리고 수원 영통구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지역이다. 통근, 업무, 일상생활 중 2가지의 도시 기능 측면에서 수원시와 밀접하게 기능적 연계를 가지는 ‘밀접도시권’에는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과 오산시의 중앙동과 초평동, 용인시 기흥구의 구갈동, 상갈동, 수지구의 상현1동, 성북동, 화성시의 매송면과 양감면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주요 기능의 일부가 연계되어 있는 광역적 도시권에 해당하는 ‘연계도시권’에는 평택시 진위면과 서탄면, 안산시 상록구 일동, 오산시 대원동, 군포시 군포1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과 기흥구 구성동, 어정동,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상현2동, 화성시 우정읍, 남양동, 비봉면, 장안면, 우정읍의 18개 지역이 해당한다.

〈그림 4-16〉 2006년 기준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동일도시권 (3개 권역 포함)	오산시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서농동 신갈동
	화성시	봉담읍 향남면 팔탄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밀접도시권 (2개 권역 포함)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초평동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 수지구 상현1동 성북동
	화성시	매송면 양감면
연계도시권 (1개 권역 포함)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안산시	상록구 일동
	오산시	대원동
	군포시	군포1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 기흥구 구성동 어정동 /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상현2동
	화성시	우정읍 남양동 비봉면 장안면 우정읍

제2절 201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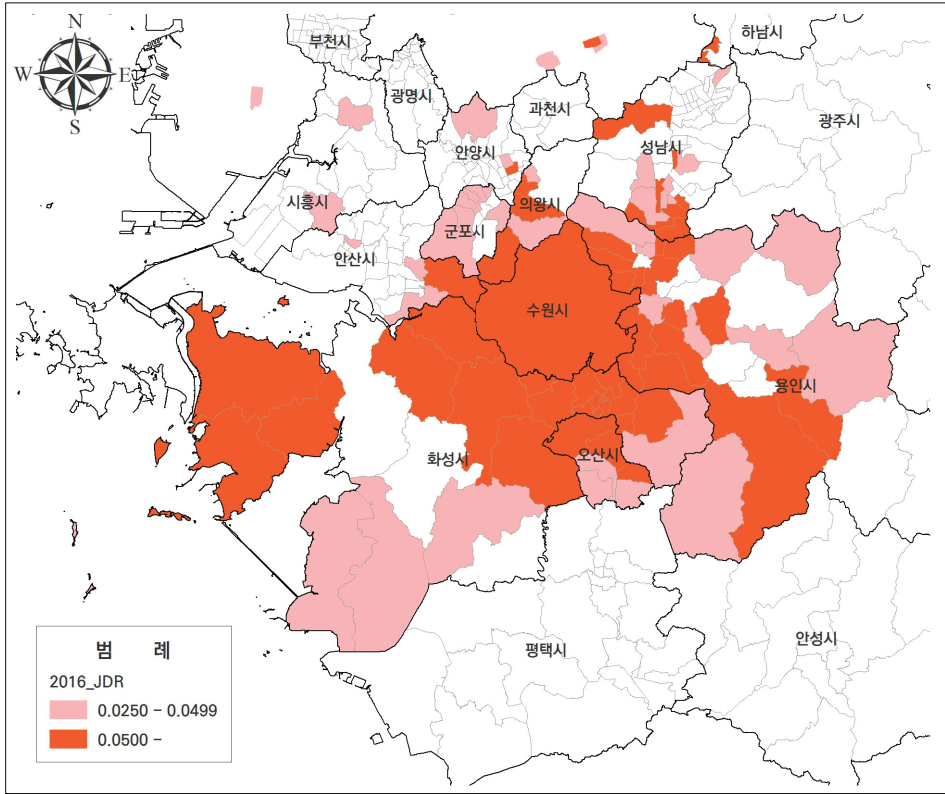
1. 통근권

여기에서는 201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2006년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통근권의 공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직업의존도(JDR), 직업점유율(JOR), 통근량의 비중(VI)의 세 가지 지표별로 살펴보면, 직업의존도의 경우에는 총 49개 지역이 5%의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주로 수원시 남부지역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화성시와 용인시, 그리고 오산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동쪽으로는 대각선 방향으로 남북 지역 모두 길게 이어진 형태를 보인다. 특히 용인시를 매개로 구미동, 정자동, 수내동 등 성남시 분당구의 상당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12년 개통된 분당선 구간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교통망의 변화가 통근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개별 지역별로는 화성시 동탄2동의 JDR 값이 0.26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화성시 매송면 0.2400,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2086, 화성시 기배동 0.1972의 순이다.

직업점유율(JOR)의 경우에는 기준값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총 54개 지역인데, JDR에 비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의 서남부 지역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JDR과 비교할 때 안산 방향의 북서쪽은 보다 많은 지역이 해당하는 반면, 대각선 반대 방향인 용인시 방향의 남동쪽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이 축소되어 있다. 개별 지역별로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JOR이 0.36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기배동 0.2692, 화성시 봉담읍 0.2215,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2100의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통근통행량의 비중(VI)의 경우에는 기준값인 1%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총 21개 지역이며, 이 중 화성시가 9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앞의 두 지표에 비해 용인시 지역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화성시 역시 하나의 집합적 형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분산된 형태로 나타난다. 서울에도 수원과 통근 관련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구로구 구로1동과 금천구 가산동, 강남구 역삼1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6년의 동일 지표 결과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통행량이 많았던 것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주요 일자리 분포와 서울로 통근하는 수원 시민의 직장분포에 변화가 상당수 발생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지역으로는 화성시 봉담읍의 통행량 비중이 0.0364로 2006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반월동 0.0300,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233, 화성시 병점1동 0.0191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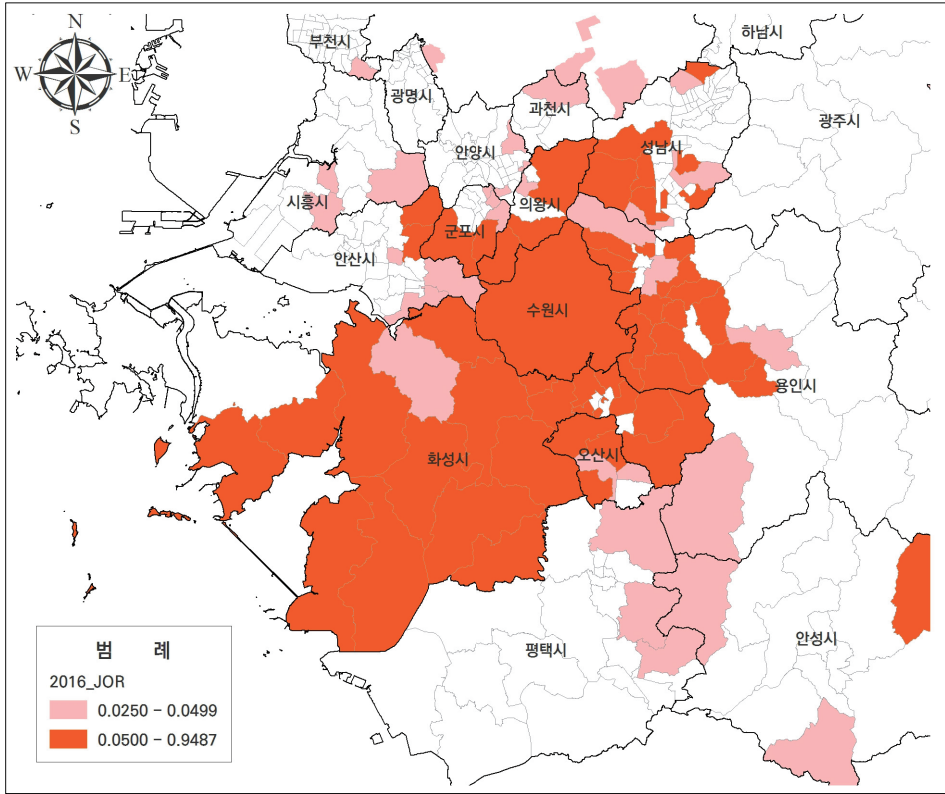
〈그림 4-17〉 직업의존도 분포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 분당구 수내3동 정자3동 이매2동 구미동 구미1동 정자1동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의왕시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하남시	위례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동부동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동 보정동 영덕동 / 수지구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주: JD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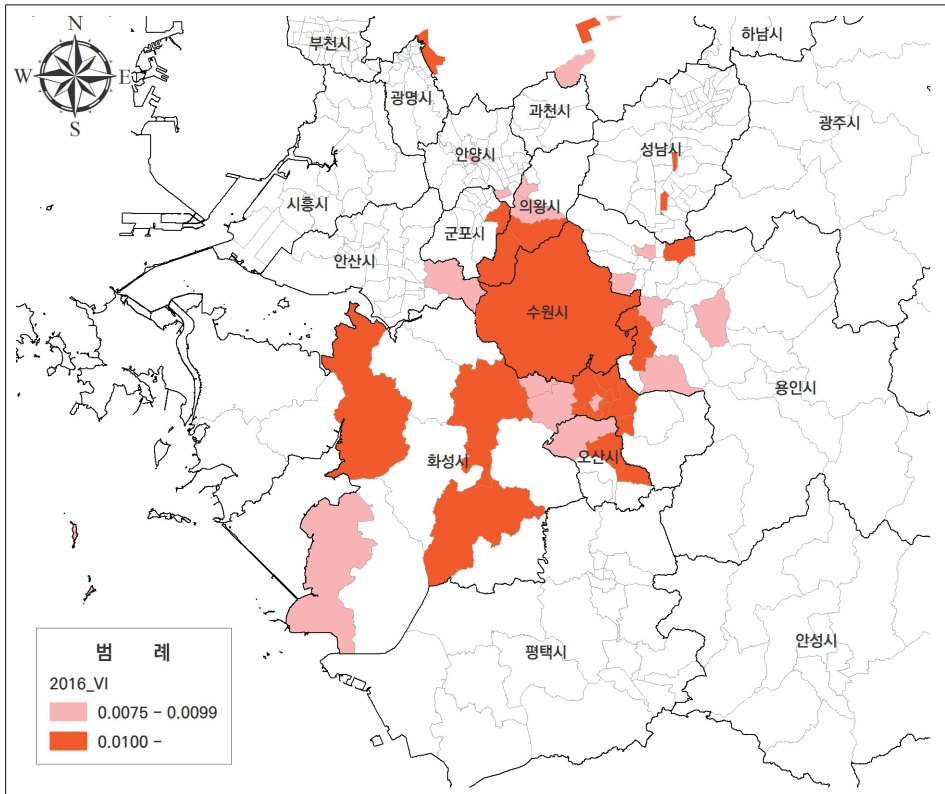
〈그림 4-18〉 직업점유율 분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위례동 / 분당구 분당동 이매1동 운중동 금곡동 판교동 정자동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안산동
오산시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군포시	군포2동 대야동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청계동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역삼동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신갈동 영덕동 / 수지구 풍덕천1동 신봉동 죽전1동 상현1동 성북동
안성시	삼죽면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마도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4동

주: JO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그림 4-19〉 통근통행량 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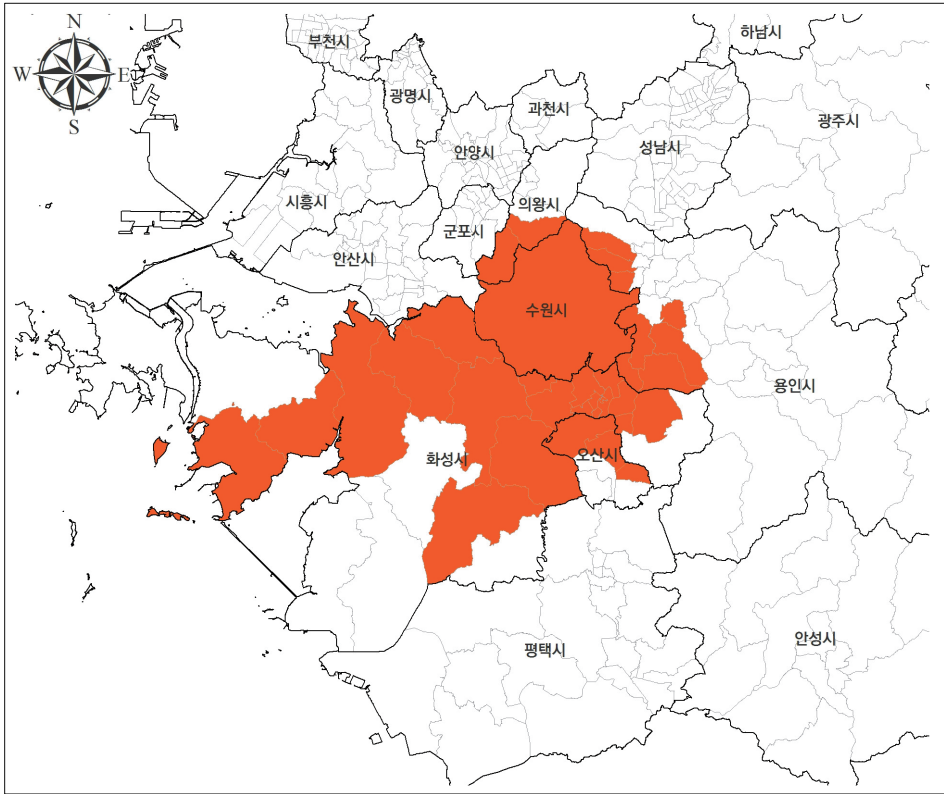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 금천구 가산동 / 강남구 역삼1동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정자동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군포시	군포1동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수지구 죽전1동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주: VI ≥ 1%(0.01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이상의 통근권 설정과 관련한 JDR, JOR, VI의 결과를 종합한 1차적인 2016년 수원 도시 통근권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4-20〉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성남시 분당구의 이매2동과 정자동, 용인시 기흥구의 동백동과 수지구의 죽전1동은 수원시 또는 다른 통근권 포함 지역과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지역으로 최종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반대로 화성시 병점2동의 경우 지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인접한 주변 지역이 모두 수원 통근권에 포함되

〈그림 4-21〉 도시 통근권 설정 최종 결과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영덕동 / 수지구 신봉동 상현1동 성북동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매송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비봉면 남양읍 마도면 서신면

주: JDR, JOR, VI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공간적으로 연결한 지역을 구분

2. 업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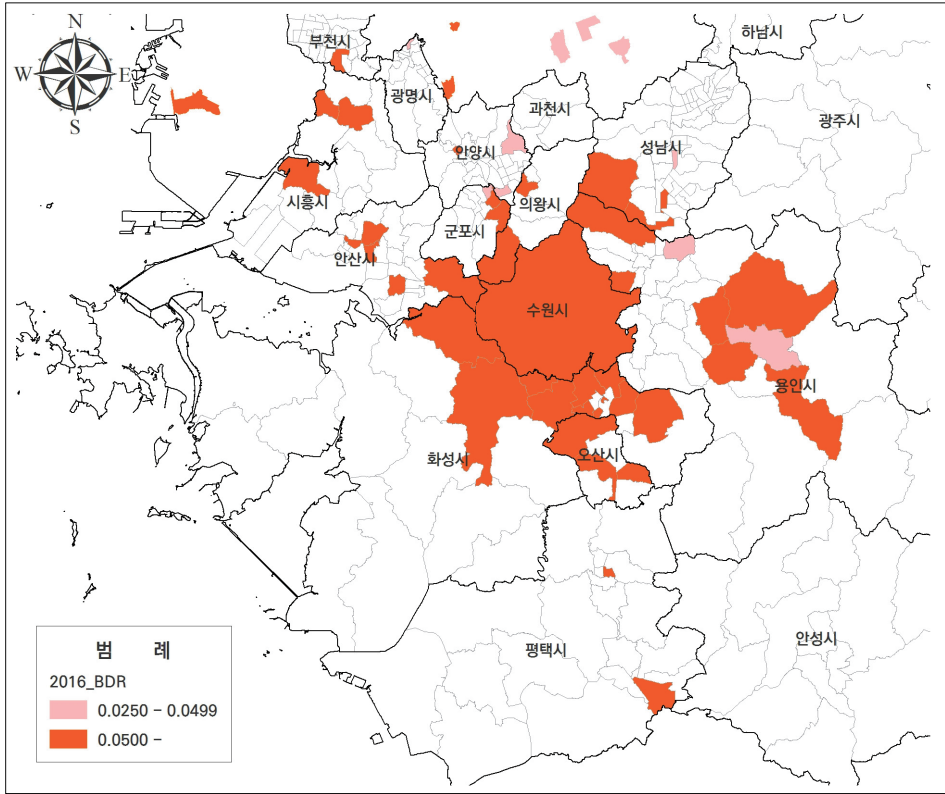
2016년 수원시 도시 업무권의 공간적 범위를 밝히기 위해 다른 도시권과 동일하게 BDR, BOR, BVI의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BDR의 경우 총 48개 지역이 기준값인 5%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는데, 앞서의 다른 지표와 달리 화성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다양한 시·군의 지역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울시가 8개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서울 내에서도 특정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서북 방향으로도 안산시 다수 지역과 시흥시, 부천시까지 해당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용인시에서도 수원시와 인접한 지역 대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처인구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특징적이다. 개별 지역별로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이 1.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성시 반월동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이 0.0500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⁵⁾.

다음으로 업무점유율에 해당하는 BOR의 경우에는 총 42개 지역이 기준값인 5%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시가 13개 지역, 화성시가 11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6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다수가 동서로 다수 포함된 반면,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모두 제외되었다. 또한 멀리서 안성시 안성2동을 비롯하여 이천시의 장호원읍과 창전동, 남양주시 별내동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 지역별로는 포천시 영중면이 1.00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7500, 이천시 장호원읍 0.0500, 화성시 병점1동 0.4286의 순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업무통행량의 비중을 의미하는 BVI의 경우에는 기준값인 1%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총 20개 지역이며, 이 중 화성시 지역이 절반 이상인 11개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역시 7개 지역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용인시는 5개 지역만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다. 수원과의 업무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 반월동으로 0.0494이며, 다음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40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340, 화성시 봉담읍 0.0309의 순으로 나타난다.

5) 개별지역의 수치가 100%, 50%에 해당하는 1.0000, 0.0500 등으로 다수 나타나는 것은 2016년의 경우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2006년과 달리 전수화되지 않은 조사집계 원시자료라는 점에서 전체 통행량 자체가 2006년에 비해 적다는 점이 개별지역별 지표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목적별 통행 중 업무통행이 통근 등 다른 목적 통행에 비해 빈도가 가장 낮다는 점과 2016년 조사가 2006년에 비해 조사표본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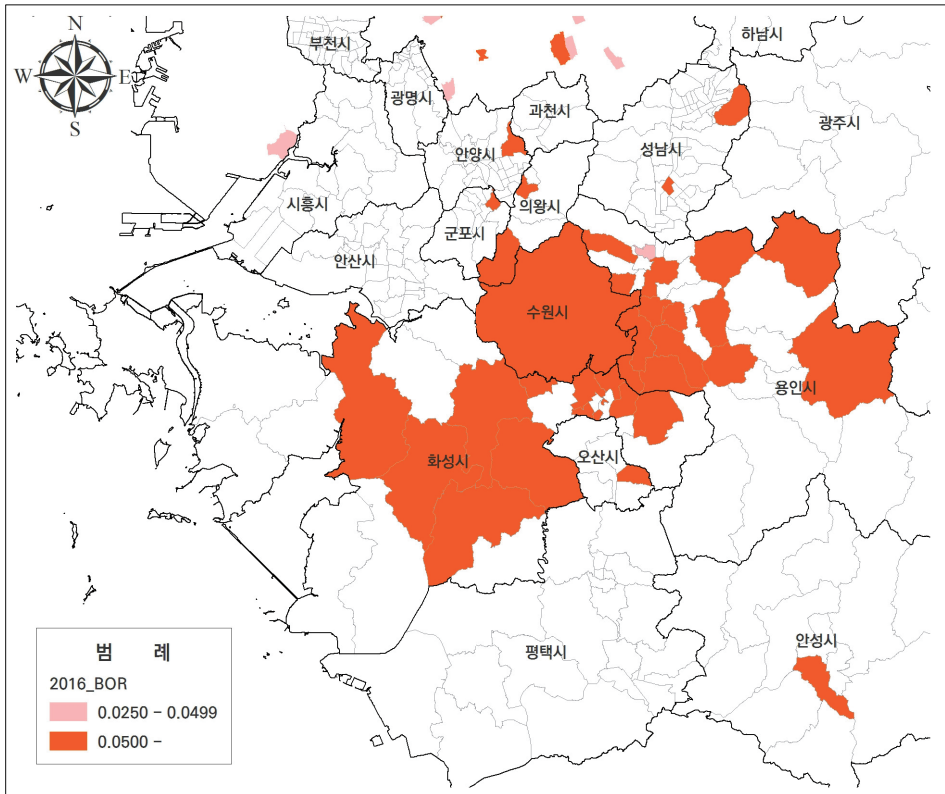
〈그림 4-22〉 업무의존도 분포



서울시	중구 명동 / 성동구 사근동 성수1가1동 / 동대문구 전농1동 / 성북구 보문동 / 금천구 시흥1동 / 영등포구 신길5동 영등포동
인천시	남구 학익1동 / 서구 검암경서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구미1동 정자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부천시	소사본동
평택시	지산동 신평동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반월동 / 단원구 와동 고잔1동 선부1동
오산시	중앙동 남촌동 세마동
시흥시	신천동 은행동 월곡동
군포시	군포1동 금정동
의왕시	부곡동 내손1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동면 역삼동 동부동 / 기흥구 동백동 / 수지구 동천동 상현1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4동

주: BD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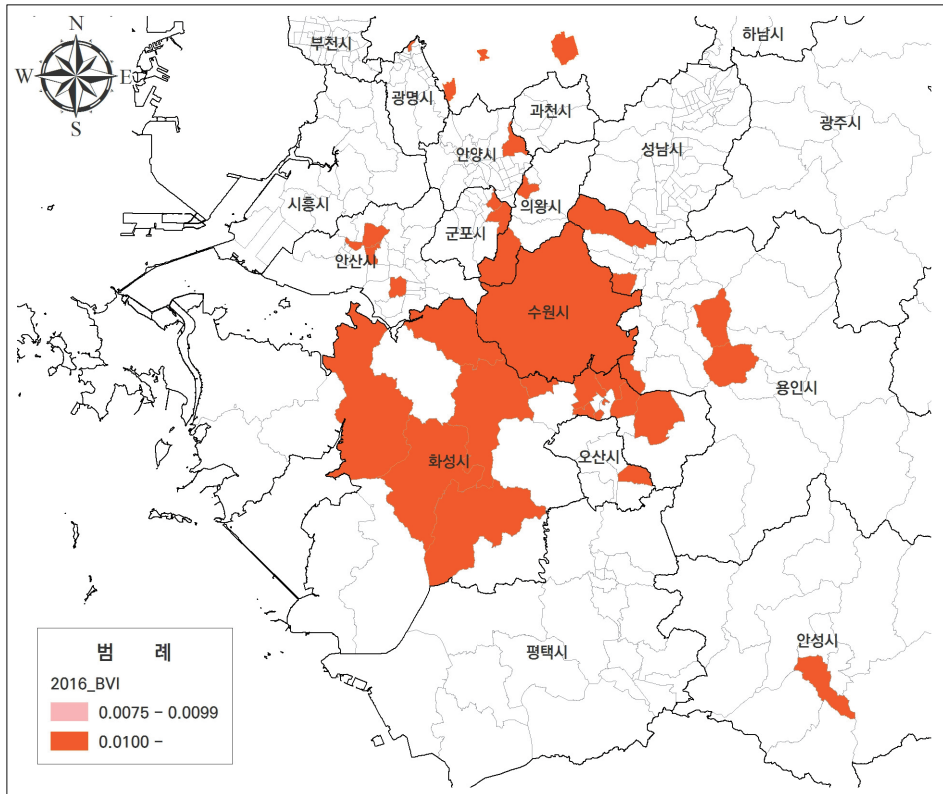
〈그림 4-23〉 업무점유율 분포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 강서구 화곡1동 / 영등포구 문래동 / 관악구 서원동 / 서초구 서초3동 / 강동구 강일동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 분당구 수내1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남양주시	별내동
오산시	중앙동
군포시	금정동
의왕시	부곡동 내손1동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양지면 역삼동 /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동 보정동 신갈동 영덕동 / 수지구 신봉동 상현1동
이천시	장호원읍 창전동
안성시	안성2동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팔탄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기배동 동탄1동 동탄4동
포천시	영중면

주: BO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그림 4-24〉 업무통행량 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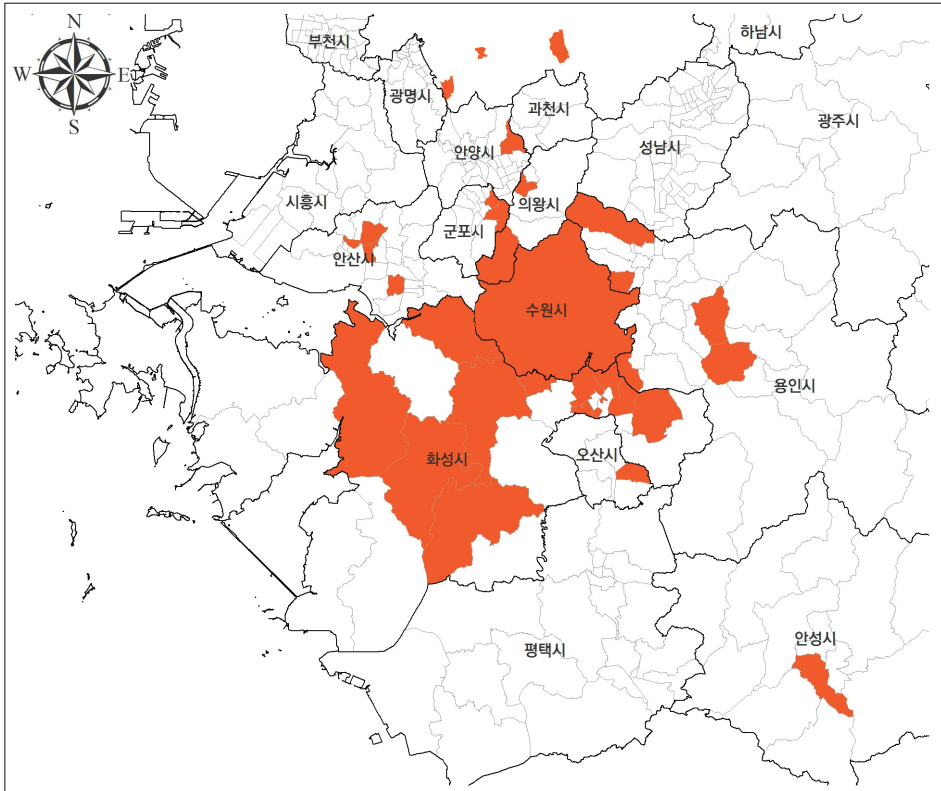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 도봉구 도봉1동 / 강서구 화곡1동 / 금천구 시흥1동 / 관악구 서원동 / 서초구 서초1동 서초3동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광명시	광명1동
안산시	상록구 사1동 / 단원구 와동 고잔1동 선부1동
오산시	중앙동
군포시	군포1동 금정동
의왕시	부곡동 내손1동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 기흥구 서농동 동백동 / 수지구 동천동 상현1동
안성시	안성2동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팔탄면 진안동 병점1동 반월동 기배동 동탄1동 동탄4동

주: BVI ≥ 1%(0.01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도시 업무권 설정을 위해 BDR, BOR, BVI의 세 가지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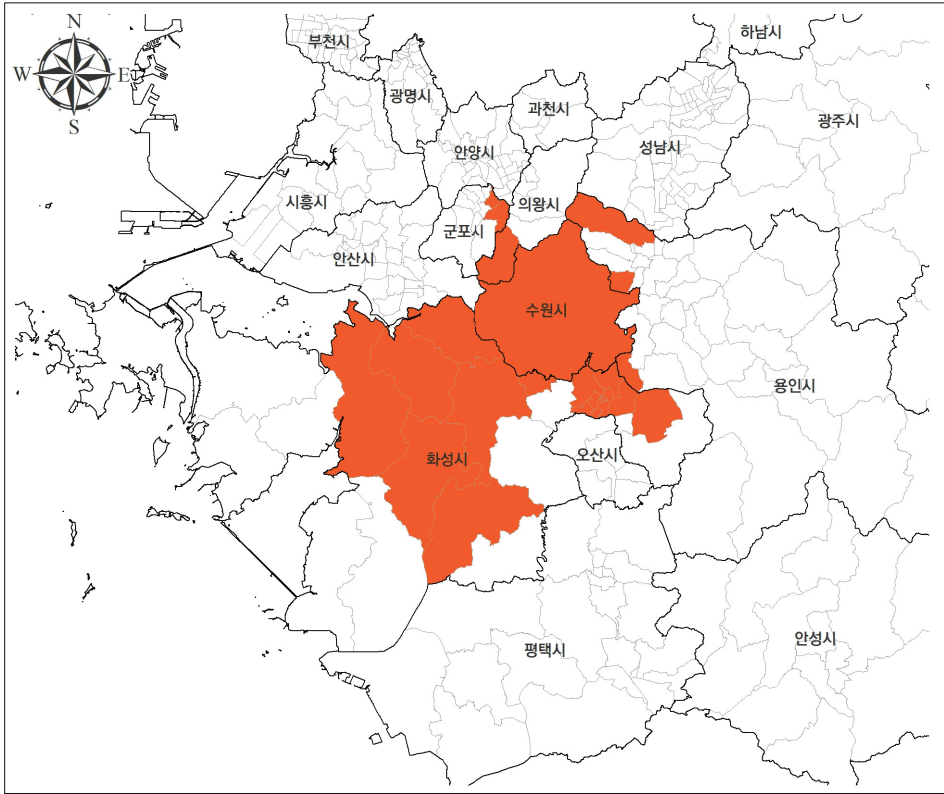
는 <그림 4-25>과 같다. 1차적으로 선정된 도시 업무권 지역 중 다른 업무권 포함 지역과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도봉구 도봉1동, 강서구 화곡1동, 금천구 시흥1동, 관악구 서원동, 서초구 서초3동과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단원구 고잔1동과 선부1동, 오산시 중앙동, 의왕시 내손1동,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기흥구 동백동, 안성시 안성2동의 총 17개 지역으로 다른 도시권에 비해 많은 수가 공간적 연결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화성시의 비봉면과 병점2동, 동탄3동은 지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변지역이 모두 수원 업무권에 포함된 지역이어서 최종적인 업무권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림 4-25> 도시 업무권 설정 1차 결과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설정한 2016년 수원 도시 업무권에는 총 20개 지역이 포함되는데, 이 중 화성시가 14개 지역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용인시의 경우 수원시와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원 업무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산시는 전체 지역이 수원 업무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26〉 도시 업무권 설정 결과



군포시	군포1동 금정동
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 수지구 동천동 상현1동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동탄1동 동탄3동 동탄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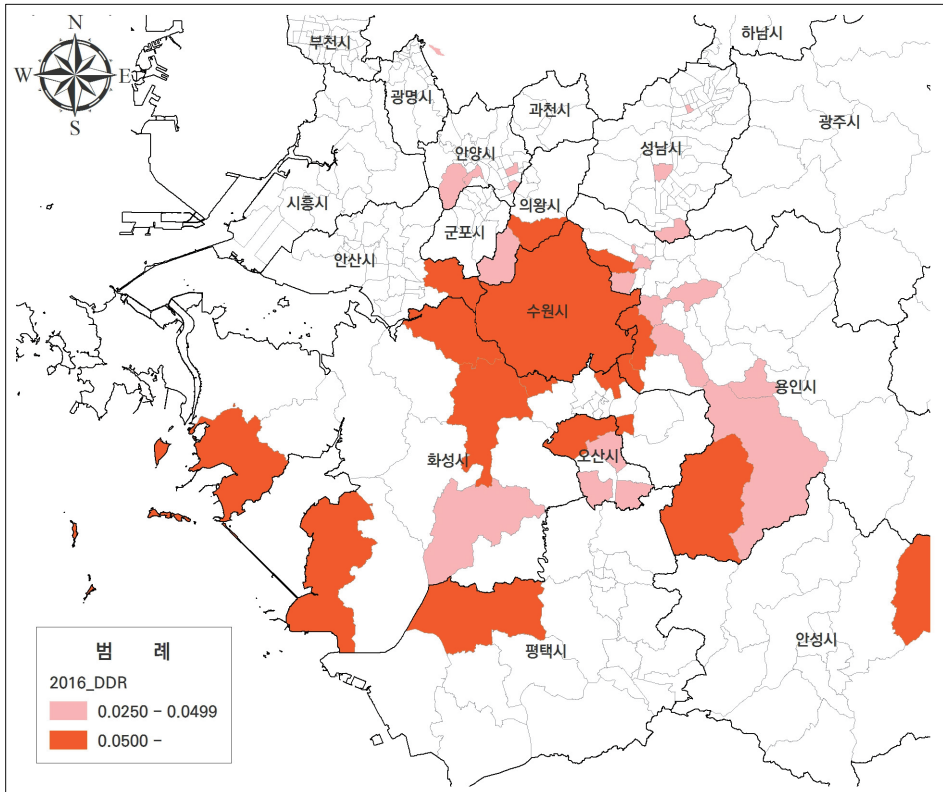
주: BDR, BOR, BVI 중 2가지 이상이 5%(0.0500) 이상이며, 공간적으로 연접한 지역을 구분

3. 일상생활권

마지막으로 쇼핑과 여가/운동/관광/레저, 외식 등을 위한 일상생활과 관련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분석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세 가지 분석지표 중 첫 번째로 일상생활의존도를 의미하는 DDR의 경우에는 총 16개 지역이 기준값인 5%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수원시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간적으로 매

우 분산된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화성시가 7개 지역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특정 권역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수원시의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경계를 접하고 의왕시 고천동 이외에는 기준값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개별 지역별로는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이 0.28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성시 반월동 0.2692, 화성시 기배동 0.1667,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1556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4-27〉 일상생활의존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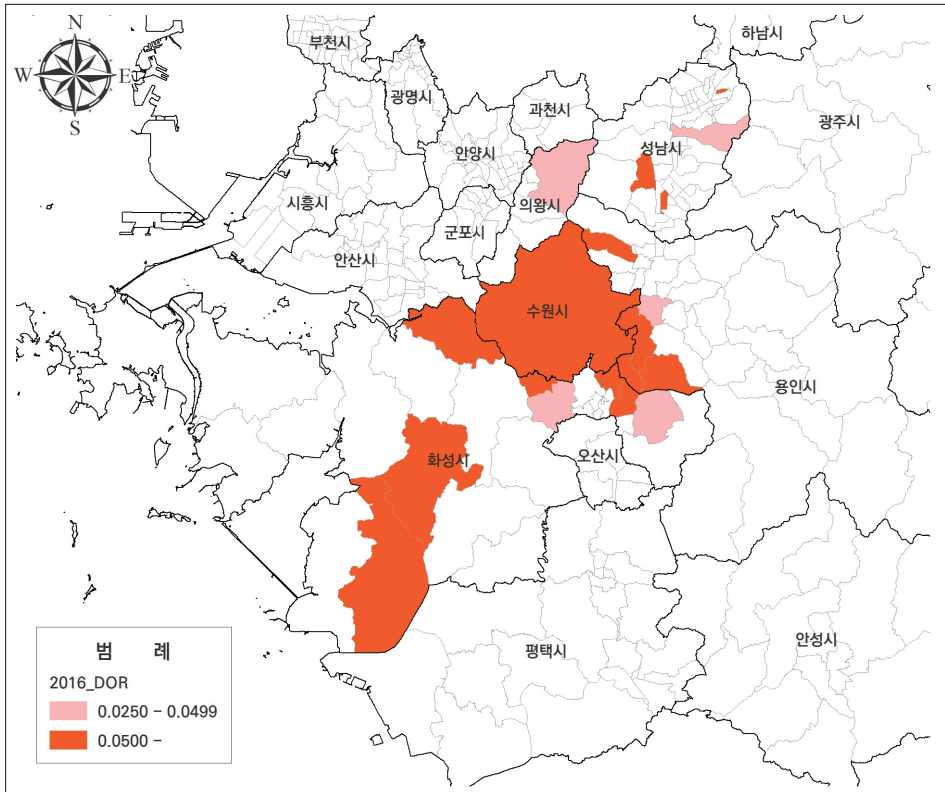


평택시	청북읍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오산시	세마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 기흥구 서농동 영덕동 / 수지구 성북동
안성시	삼죽면
화성시	봉담읍 우정읍 매송면 서신면 반월동 기배동 동탄2동

주: DDR \geq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일상생활접유율(DOR)의 경우에는 총 16개 지역이 기준값인 5%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성시가 6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며, 용인시가 4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지역별로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이 0.1639로 가장 높은 DOR 값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시 매송면이 0.136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 0.1092,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이 0.0909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4-28〉 일상생활접유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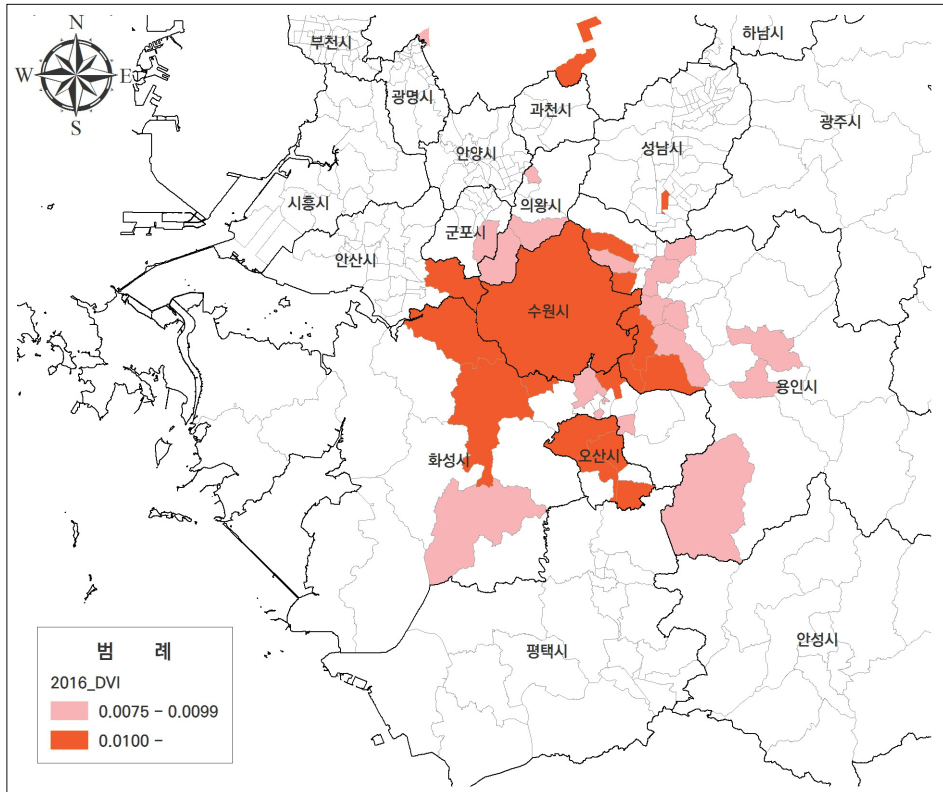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 분당구 판교동 정자동
남양주시	금곡동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서농동 영덕동 / 수지구 신봉동
화성시	매송면 팔탄면 장안면 반월동 기배동 동탄1동
양주시	양주1동

주: DOR ≥ 5%(0.05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일상생활의 통행량의 비중인 DVI의 경우 총 20개 지역이 기준값인 1% 이상을 만족한다. 개별 지역별로는 화성시 반월동이 0.04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40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340, 화성시 봉담읍 0.0309의 순이다. 남양주시 금곡동의 경우에는 수원과의 지리적 거리가 상당히 있음에도 일상생활 목적의 통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4-29〉 일상생활통행량 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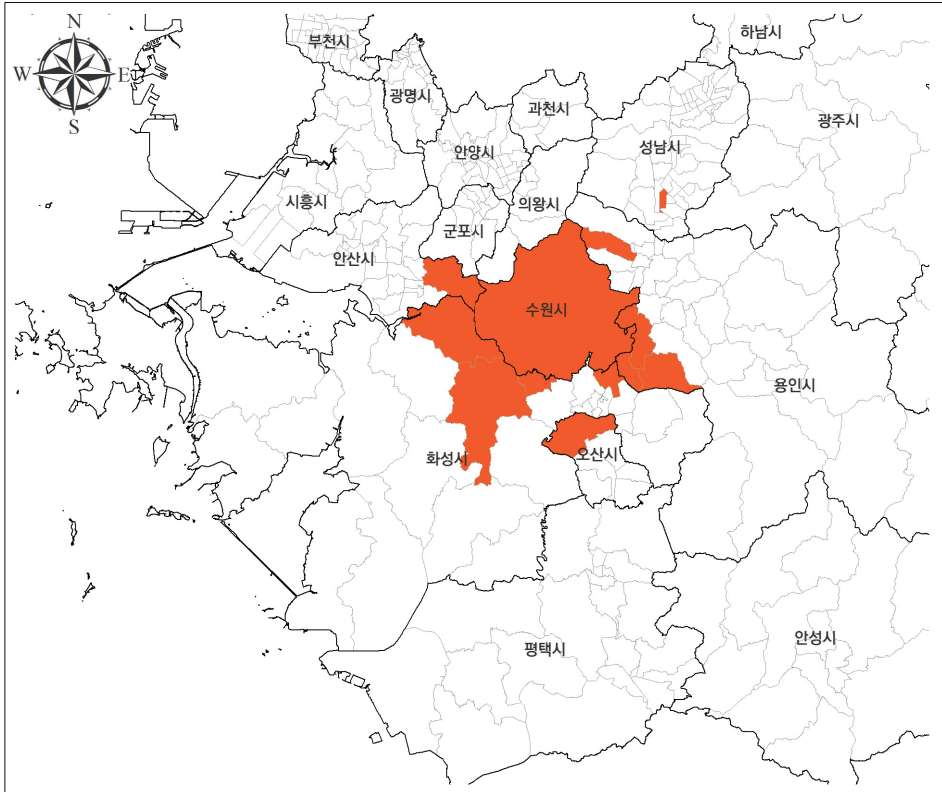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 강남구 역삼1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남양주시	금곡동
오산시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서농동 영덕동 / 수지구 신봉동 상현1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반월동 기배동

주: DVI \geq 1%(0.0100) 이상인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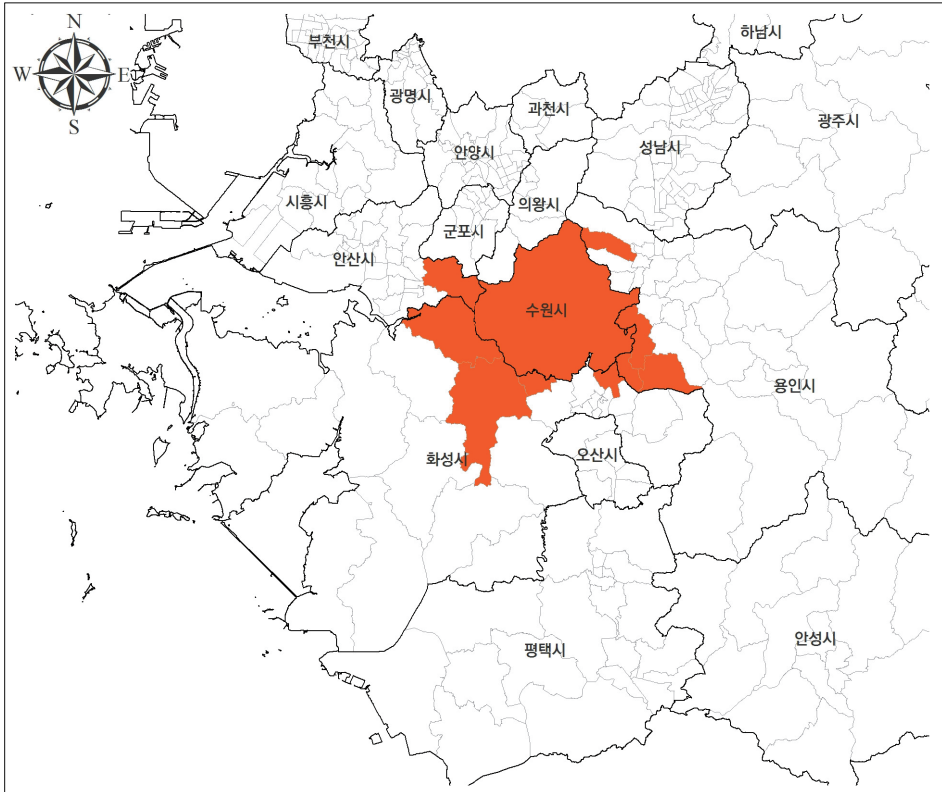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2016년 도시 일상생활권을 1차적으로 설정한 결과는 <그림 4-30>과 같다. 여기에서 인접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권 포함 지역과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오산시 세마동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수원시의 일상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그림 4-30> 도시 일상생활권 설정 1차 결과



2016년 기준 수원의 일상생활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총 9개 지역이며, 화성시가 봉담읍, 매송면, 반월동, 기배동의 4개 지역이며, 용인시가 동일하게 기흥구 기흥동, 서농동, 영덕동, 수지구 신봉동의 4개 지역을 포함한다. 이외에 수원시와 행정경계를 접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지역 역시 수원의 일상생활권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림 4-31〉 일상생활권 설정 결과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서농동 영덕동 / 수지구 신봉동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반월동 기배동

주: DDR, DOR, DVI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공간적으로 연결한 지역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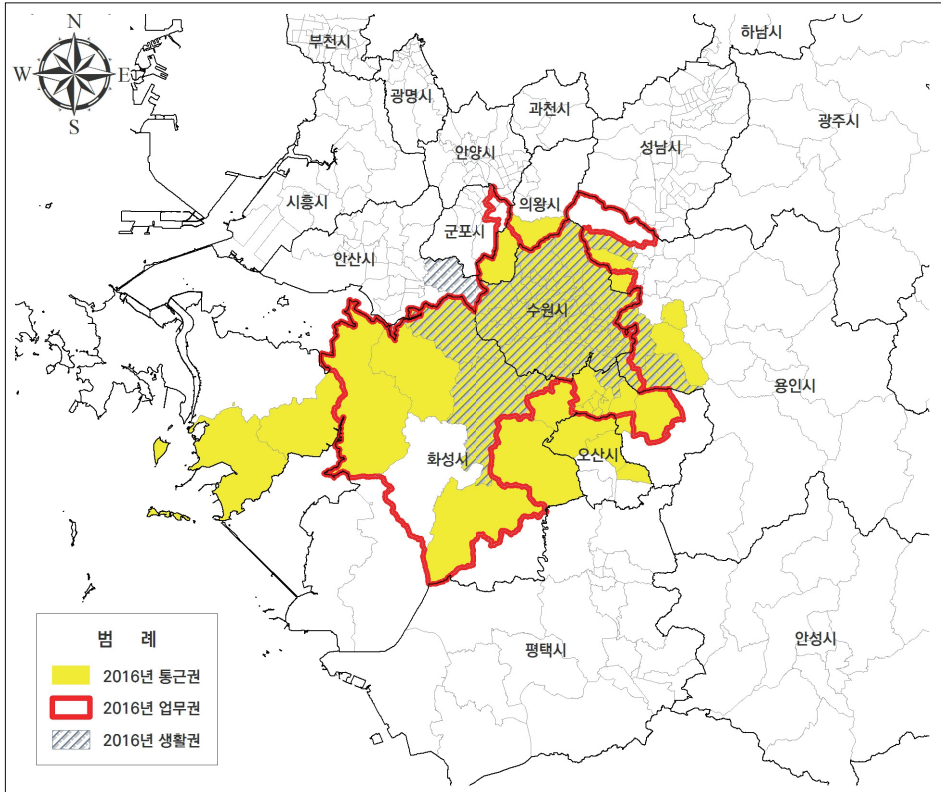
4. 종합

2006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도시권 유형을 바탕으로 2016년 기준 수원의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를 유형화 하면 〈그림 4-32〉과 같이 나타난다. 수원 도시권의 전체적인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와 오산시, 용인시를 중심으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총 6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할 때 평택시 지역이 제외된 반면, 군포시 지역이 새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2006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원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이 중심인데, 2006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용인시와 화성시의 외곽지역이 다

수 제외되었다. 도시 기능별 도시권의 분포를 보면 통근권과 업무권이 규모 자체는 비슷하지만 업무권이 상대적으로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반면, 통근권은 남북 방향으로 보다 확대되어 있다.

3개의 권역에 모두 포함되는 ‘동일도시권’, 즉 통근, 업무, 일상생활 등 주요 기능과 활동 모두가 수원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실상 수원과 도시 활동을 같이하는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과 화성시의 봉담읍, 매송면, 반월동, 기배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근, 업무, 일상생활 중 2가지의 도시 기능 측면에서 수원시와 밀접하게 기능적 연계를 가지는 ‘밀접도시권’에는 의왕시 부곡동을 비롯하여 용인시 기흥구의 기흥동과 신갈동, 수지구의 신봉동과 상현1동, 화성시의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1동, 동탄3동, 동탄4동의 14개 지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 주요 기능의 일부가 연계되어 있는 광역적 도시권에 해당하는 ‘연계도시권’에는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과 오산시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군포시 군포1동과 금정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기흥구의 구갈동, 상갈동과 수지구의 동천동, 성북동, 그리고 화성시의 팔탄면, 정남면, 서신면, 마도면, 화산동, 동탄2동의 17개 지역이 해당한다.

〈그림 4-32〉 2016년 기준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동일도시권 (3개 권역 포함)	용인시 화성시	기흥구 서농동 봉담읍 매송면 반월동 기배동
밀접도시권 (2개 권역 포함)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부곡동 기흥구 기흥동 신갈동 / 수지구 신봉동 상현1동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1동 동탄3동 동탄4동
연계도시권 (1개 권역 포함)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상록구 반월동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군포1동 금정동 고천동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 수지구 동천동 성북동 팔탄면 정남면 서신면 마도면 화산동 동탄2동

제3절 수원 도시권의 변화양상과 특징

1. 2006~2016년 도시권의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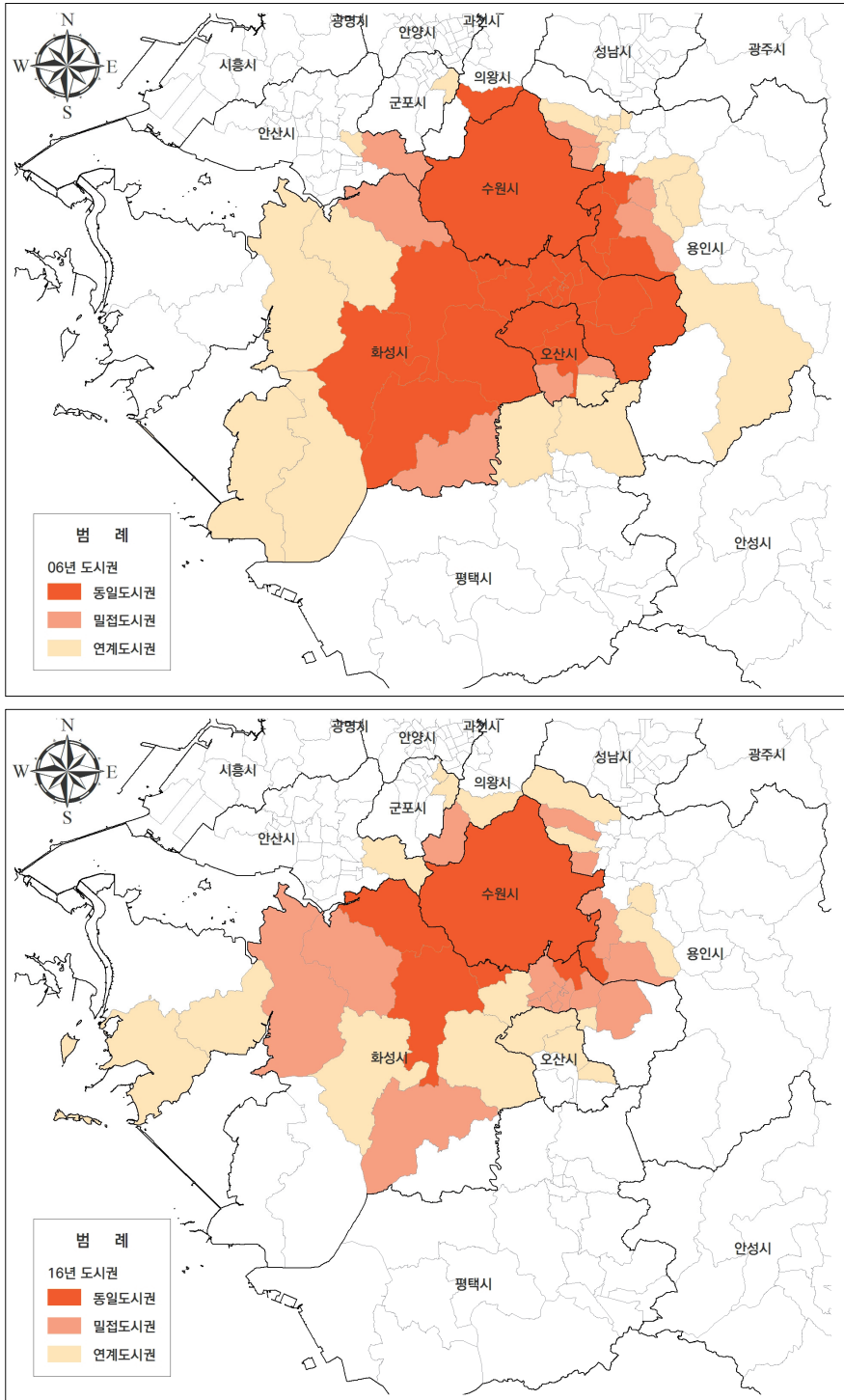
2006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2016년 기준 수원의 도시권은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핵심적인 도시 기능 전반이 긴밀하게 연계된 동일도시권 지역의 범위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수원시 남부와 행정경계를 접하고 있는 화성시부터 오산시에 이르는 지역이 2006년에는 대부분 동일도시권에 포함됐지만, 2016년에는 밀접도시권이나 연계도시권으로 전환되면서 동일도시권 지역이 수원시에 인접한 화성시 및 용인시의 일부 지역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변화된 지역의 상당수는 밀접도시권이 아닌 연계도시권으로 변화하여 수원시의 도시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연계의 정도는 대폭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권의 확장과 축소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기존 수원 도시권의 대부분을 형성했던 화성시와 용인시에서 수원과의 기능적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수원에 대한 의존성이 약해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비교 대상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화성시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진다⁶⁾. 인구의 증가와 함께 수반되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시 서비스의 구비는 수원에 대한 의존보다 지역 자체 내에서의 이동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기존에 수원시가 제공하던 도시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수원시와의 기능적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원의 남쪽에 해당하는 화성시와 오산시 지역과 수원간의 기능적 연계성이 약화된 것은 이 지역에 동탄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삼성전자 사업장 등 고용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수원시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 내 중심도시로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원보다 북쪽에 입지한 도시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중심도시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원의 도시권이 북쪽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쪽으로는 수원시와 직접적으로 행정경계를 접했던 지역 중 기능적 연계성이 약했던 지역을 일부 편입하는 것에 그친 반면, 남쪽으로는 넓은 범위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주요한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새로운 지역 소규모 지역중심지에 넘겨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원시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는 북쪽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축소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6)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용인시의 인구는 2005년 84만 명에서 2016년 98만 명으로, 화성시는 47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림 4-33〉 2006-2016년 도시권의 변화



2. 2006~2016년 기능별 도시권의 변화 양상

여기에서는 앞서 전반적인 도시권의 변화 양상에 대한 비교에 이어 2006년과 2016년 사이 기간 동안의 통근권, 업무권, 일상생활권의 각 기능별 도시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 통근권의 변화 양상을 보면, 화성시 동부와 남부의 다수 지역,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의 일부 지역이 2016년에는 수원 통근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에는 수원 통근권에 해당하였지만, 2016년에 제외된 지역은 13개 지역에 이르며, 이에 반해 2016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의왕시 부곡동과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지역에 불과하다. 제외된 지역이 주로 화성시의 남동,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새로 편입된 지역은 서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약간씩 북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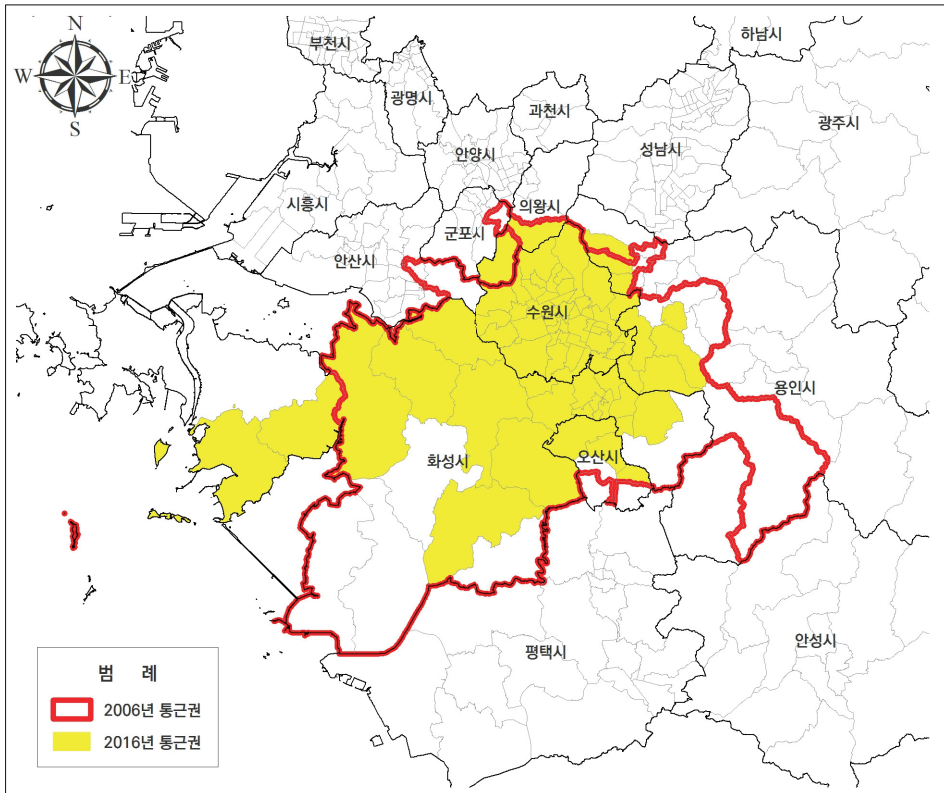
통근권과 유사하게 업무권의 경우에도 2006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위치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업무권에 포함되었던 지역 중 남쪽에 위치한 화성시의 여러 지역과 함께 특히 오산시의 경우에는 전체 지역이 업무권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화성시의 북부에 해당하는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의 경우에는 2006년에는 수원 업무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군포시 군포1동과 금정동, 의왕시 부곡동 등도 새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서 수원시의 도시 업무권 역시 통근권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범위가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일상생활권의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비해 공간적 범위의 축소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비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2006년 일상생활권에 포함되었던 지역의 2/3이 가량이 2016년에는 제외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일상생활권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던 화성시 및 오산시 지역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앞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동탄 신도시라고 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수원시가 제공하던 도시 서비스의 상당수를 동탄 신도시가 대체함으로써 이들 지역과 수원과의 기능적 연계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탄 1신도시 개발지역에 해당하는 2016년 동탄1~3동 지역의 일상생활권 관련 지표들을 보면 해당 지역에서 수원으로의 유출 통행량을 의미하는 일상생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목적으로 수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통행을 구성하는 통행 목적이 쇼핑, 여가, 운동, 외식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능은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과 상권의 형성에 따라 제일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도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권의 범위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통근권과 업무권의 경우 주거 기능 중심의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더라도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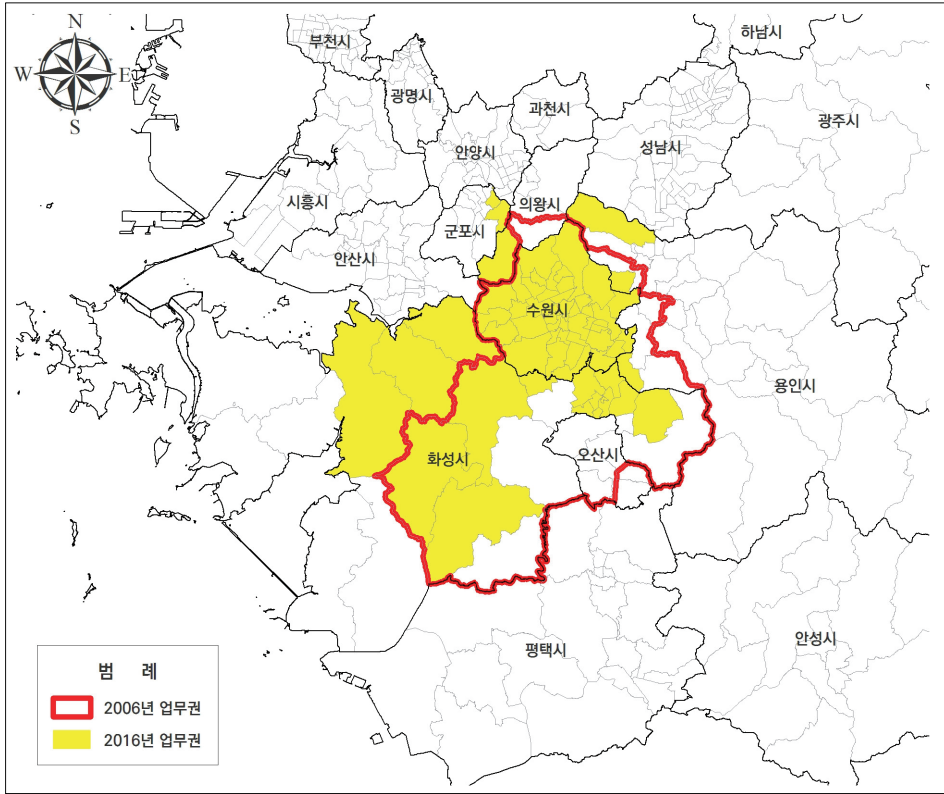
생활 기능에 비해 쉽게 기존의 기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능적 도시권은 새로운 도시 서비스 공급지가 생겨난 남쪽 지역을 제외한 반대 방향으로 조금의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34〉 2006~2016년 도시 통근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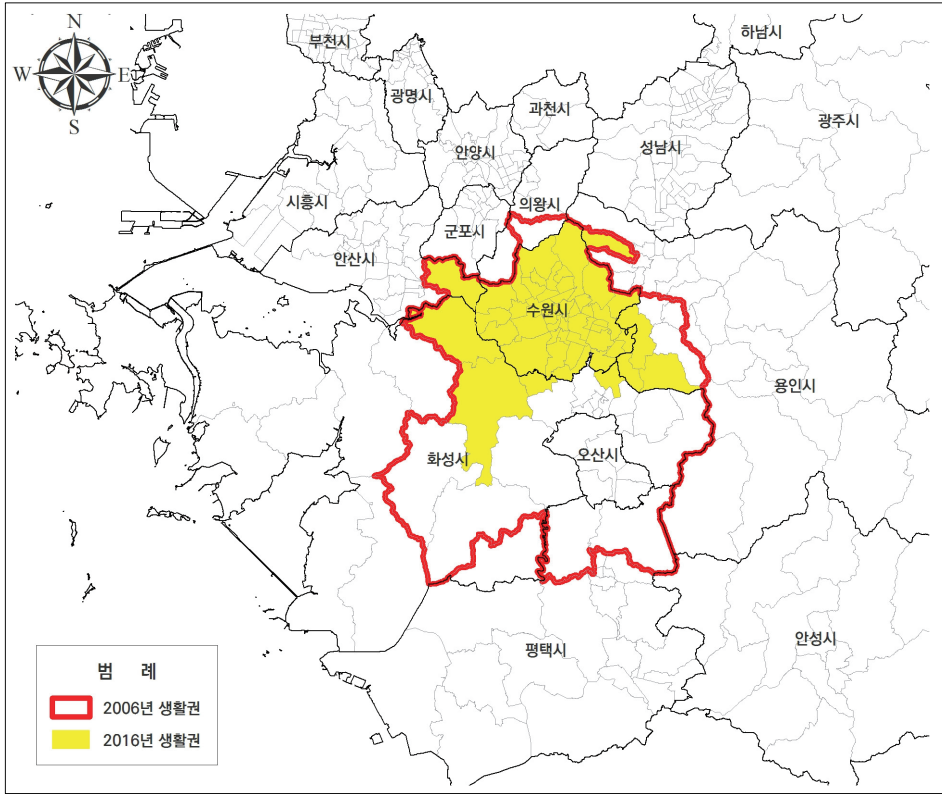
2016년 제외	안산시	상록구 일동 반월동
	오산시	남촌동
	군포시	군포1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 기흥구 구성동 동백동 상하동 신갈동
	화성시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동탄면(동탄동 지역 제외)
2016년 추가	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화성시	서신면 마도면

〈그림 4-35〉 2006~2016년 도시 업무권의 변화



2016년 제외	오산시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신갈동 영덕동 / 수지구 상현2동 성북동
	화성시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동탄동 제외 지역) 화산동 동탄2동
2016년 추가	군포시	군포1동 금정동
	의왕시	부곡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화성시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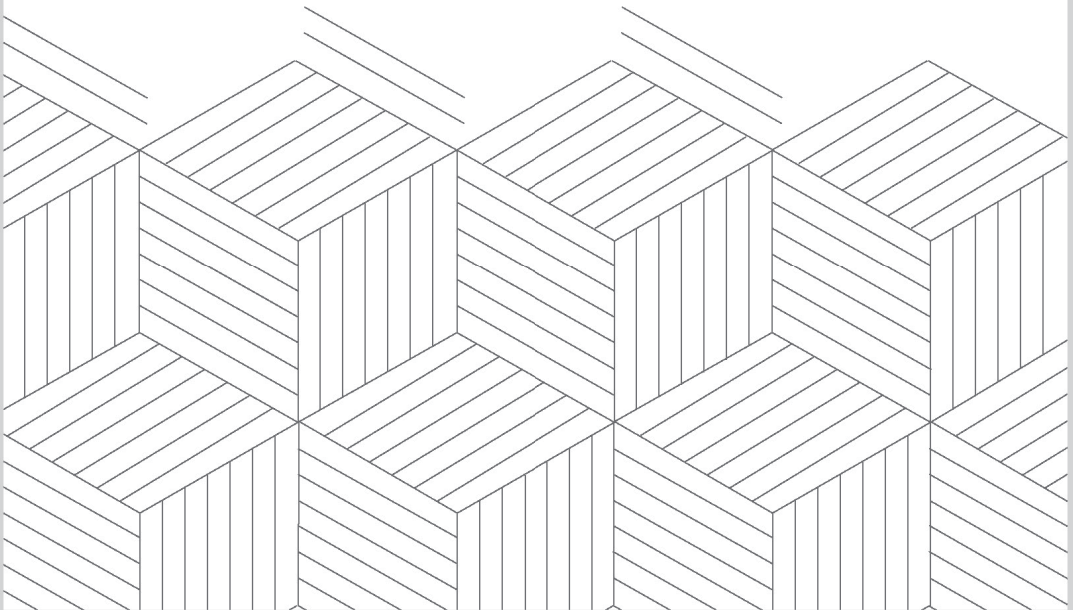
〈그림 4-36〉 2006~2016년 도시 일상생활권의 변화



2016년 제외	오산시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의왕시	고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신갈동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5장 요약 및 결론

수원은 과거부터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조선 후기 정조 대에 화성 축조와 읍치 이전을 통해 현재의 수원시 위치에 도시의 형태가 갖춰지면서 경기 남부지역에는 현재와 같은 도시체계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1949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존의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까지 현재의 수원시 지역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를 포함하는 수원군의 행정·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하였고, 이러한 역할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 오산을 하나의 지역이자 문화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하지만 남양읍 등 화성시의 일부 지역은 수원시의 역사·문화적 전통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오기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도 화성시 일대 전체가 수원과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수원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크게 관련성을 갖지 않는 용인시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 현상에 따라 지역의 성격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특히 수원과 행정경계를 접하고 있는 기흥구나 수지구 일부 지역은 도시 경관상으로는 수원과의 명확한 경계를 구분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연담도시화(conurbation)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루어진 광고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는 그 입지가 수원과 용인시에 모두 걸쳐서 진행되면서 두 지역간의 도시경관 및 기능상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고려할 때 주요 도시 기능과 서비스의 측면에서 수원시와 강한 연계성을 가진 수원의 도시권(city-region)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한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특징, 그리고 최근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원과 주변지역 간의 주요 목적별 통행량을 통해 중심도시 수원과 주변지역으로서의 수원 도시권 지역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6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목적통행별 O/D 자료를 통해 고용 연계성이 높은 도시 통근권, 업무 연계성이 높은 도시 업무권, 일상생활 활동의 연계성이 높은 도시 일상생활권의 3개 기능별 도시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기능별 도시권의 설정

을 위해 (직업, 업무, 일상생활)의존도와 점유율, 통행량 비중의 세 가지 지표를 각각 도출하고, 세 지표 중 두 가지 이상의 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1차적인 도시권 후보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는 등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기능별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세 가지의 기능별 도시권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을 주요 기능과 활동 모두가 수원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실상 수원과 도시 활동을 같이하는 지역으로 보고 '동일도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가지의 도시 기능 측면에서 수원시와 밀접하게 기능적 연계를 가진 지역은 '밀접도시권'으로, 도시 주요 기능 중 한 가지만 연계되어 있는 광역적 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계도시권'으로 각각 개념화하였다.

도시권 설정의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수원 도시권의 주요 지역이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수원에 인접한 용인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원시가 지역 내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동시에 도청, 주요 기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수원의 북쪽으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고차 중심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 도시권은 그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넓은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수원 이남지역으로 치우쳐 있고, 북쪽으로는 행정경계를 접한 의왕시 등 극히 일부지역만이 포함된다.

각 기능별 도시권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거와 고용의 교외화 현상에 따라 통근과 역통근을 반영하는 도시 통근권의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쇼핑, 여가 등을 목적으로 한 일상생활권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06년의 수원 도시권에 비해 2016년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수원 남부지역에 접해있는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세 가지 도시기능 중에서 특히 일상생활권의 공간적 범위가 가장 크게 축소되었으며, 통근권과 업무권의 경우 남쪽의 상당수 지역이 제외되는 동시에 북쪽의 일부 지역이 새로 편입되면서 2006년에 비해 북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수원과 사실상 도시 기능을 공유하는 '동일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수원 도시권의 대다수를 형성하던 화성시와 용인시 일대에 여러 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원 도시권의 축소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남부 지역의 경우 2000년대

후반 동탄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기존 수원시가 제공하던 도시 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특히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제공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쇼핑, 외식, 여가 등 일상생활권의 범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도시 활동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전 시기에 비해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공공 행정의 관점에서 설정된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의 제공과 도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시 기능상의 연계에 기반한 도시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지역 간 경쟁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적인 대응이 아니라 도시권의 차원에서 지역의 공동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수원시는 경기도 남부의 중심도시라는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자부심은 경기도의 ‘수부도시’(首府都市)라는 명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체적인 수원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와 그 변화양상과 특징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에 기초한 광역적 도시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국토해양부 외(3명)(2009),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9.4. 변경사항 반영)
- 권용우 외(18명)(2016), 도시의 이해 제5판, 박영사
- 권창기·정현욱(2007),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국토연구 제52권, pp.39-58
- 김범수(2010), 강원 도시권 설정 연구, 강원연구원
- 남영우(2015), 도시공간구조론 제2판, 법문사
- 노승철 외(2명), 2012, “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에 기초한 도시권 설정 방법론 연구”,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제15권 3호, pp.23-43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2010), 국토·지역계획론 3정판, 보성각
- 변필성·김광익(2007), “미국의 도시권 정의: Core Based Statistical Areas”, 국토지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pp.95-101
- 수원시사편찬위원회(2014),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임석희(2017),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대구도시권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1호, pp.19-35
- 통계청(2007), 도시권 확정, 통계청
- 한상진 외(2명)(2014),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능적 도시지역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제17권 제2호, pp.137-147

〈영문 자료〉

- Healey, P.(2009), City regions and place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43(6), pp.831-843
- Parr, J.(2005), Perspective on the City-Region, *Regional Studies* 39(5), pp.555-566
- Rodriguez-Pose. A., 2008, The rise of the 'city-region' concept and its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16(8), pp.1025-1046
- Scott, A.(2001).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city-reg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9(7), pp.813-826

| 부 록 |

1. 도시권 확정을 위한 주요 지표 결과

1) 2006년

(1) 통근권

	JDR		JOR		VI	
1	오산시 세마동	0.3748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4079	화성시 봉담읍	0.0312
2	화성시 반월동	0.3038	화성시 정남면	0.4039	화성시 병점1동	0.0224
3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564	인천 강화군 양도면	0.4014	화성시 정남면	0.0216
4	화성시 병점2동	0.2004	화성시 병점1동	0.3908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208
5	화성시 병점1동	0.1929	화성시 반월동	0.3816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203
6	화성시 기배동	0.1927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3485	화성시 우정읍	0.0191
7	화성시 진안동	0.1897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3380	화성시 진안동	0.0189
8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43	화성시 봉담읍	0.3374	화성시 반월동	0.0185
9	화성시 매송면	0.1758	화성시 양감면	0.3288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176
10	화성시 정남면	0.1504	오산시 세마동	0.3219	화성시 동탄면	0.0174
11	광명시 학운동	0.1498	화성시 화산동	0.3024	화성시 향남면	0.0173
12	화성시 화산동	0.1493	화성시 우정읍	0.2808	화성시 팔탄면	0.0143
13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1388	화성시 향남면	0.2628	화성시 남양동	0.0143
14	화성시 봉담읍	0.1233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2598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142
15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1175	화성시 진안동	0.2573	군포시 군포1동	0.0134
16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1169	화성시 비봉면	0.249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114
17	서울 중구 필동	0.1124	화성시 기배동	0.2473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0.0114
18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1059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0.2447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0.0106
19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0.1043	화성시 남양동	0.2370		
20	화성시 팔탄면	0.1000	화성시 병점2동	0.2306		
21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931	화성시 동탄면	0.2181		
22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0924	화성시 팔탄면	0.2151		
23	화성시 비봉면	0.0922	의왕시 부곡동	0.1857		
24	화성시 동탄면	0.0874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1848		
25	여주군 산북면	0.086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0.1718		
26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846	화성시 매송면	0.1689		
27	양평군 지제면	0.0845	의왕시 고전동	0.1676		
28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0.082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0.1632		
29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0804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0.1471		
3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0.0804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0.1410		

	JDR		JOR		VI
31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0.0800	평택시 서탄면	0.1383	
32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0754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0.1367	
33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0.0747	오산시 대원동	0.1336	
3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728	화성시 송산면	0.1211	
35	화성시 남양동	0.0724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0.1187	
36	오산시 남촌동	0.0662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1185	
37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0660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0.1181	
38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0.0659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0.1162	
39	의왕시 고천동	0.0651	의왕시 오전동	0.1098	
40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0.0609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1064	
41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0.0603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동	0.1042	
42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0.0591	의왕시 내손1동	0.1032	
43	화성시 양감면	0.0576	오산시 중앙동	0.1017	
44	오산시 중앙동	0.0574	서울 용산구 한남2동	0.1013	
45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0.0558	군포시 군포1동	0.1001	
46	서울 동작구 사당2동	0.0549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0992	
4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0.0546	서울 관악구 남현동	0.0983	
48	화성시 장안면	0.0542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0.0947	
49	오산시 신장동	0.0539	군포시 수리동	0.0939	
50	안산시 상록구 일동	0.0523	평택시 신장1동	0.0927	
51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0.0523	서울 동작구 사당5동	0.0915	
52	군포시 군포1동	0.0509	오산시 남촌동	0.0878	
53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0.0501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0.0863	
54			군포시 궁내동	0.0860	
55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0.0855	
56			성북구 정능3동	0.0850	
57			평택시 청북면	0.0844	
58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0.0844	
59			안산시 상록구 일동	0.0823	
60			평택시 진위면	0.0807	
61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782	
62			화성시 장안면	0.0771	
63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0.0763	
64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0.0760	
65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0.0739	
66			안성시 양성면	0.0728	
67			용인시 기흥구 여정동	0.0727	
68			오산시 신장동	0.0714	
69			군포시 금정동	0.0704	
70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0.0678	
71			서울 강서구 화곡2동	0.0677	
7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0.0675	

	JDR	JOR	VI
73		서울 금천구 시흥3동 0.0660	
74		안성시 서운면 0.0630	
75		화성시 마도면 0.0627	
76		여주군 대신면 0.0604	
77		군포시 오금동 0.0603	
78		평택시 지산동 0.0603	
7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0.0599	
80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0.0578	
81		이천시 모가면 0.0567	
82		군포시 군포2동 0.0566	
83		군포시 산본1동 0.0563	
84		오산시 초평동 0.0558	
85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0554	
8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0.0548	
87		이천시 장호원읍 0.0543	
88		동두천시 중앙동 0.0534	
89		이천시 마장면 0.0522	
90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0.0519	
91		서울 구로구 구로1동 0.0517	
92		서울 동작구 흑석3동 0.0512	
93		성남시 분당구 야탑2동 0.0511	
94		평택시 서정동 0.0505	

(2) 업무권

	BDR		BOR		BVI	
1	화성시 반월동	0.4616	화성시 병점1동	0.4711	화성시 병점1동	0.0335
2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4198	서울 관악구 봉천9동	0.3538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228
3	화성시 병점1동	0.3075	화성시 진안동	0.2490	화성시 봉담읍	0.0191
4	화성시 병점2동	0.2911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222	화성시 진안동	0.0185
5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0.2895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0.2189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174
6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2421	화성시 반월동	0.1847	화성시 동탄면	0.0162
7	남양주시 호평동	0.2333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0.1805	인천 남동구 논현교잔동	0.0161
8	화성시 화산동	0.2302	인천 연수구 옥련1동	0.1742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126
9	화성시 기배동	0.216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170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0115
10	화성시 양감면	0.1972	평택시 지산동	0.1634	화성시 우정읍	0.0108
11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1912	화성시 서신면	0.1583	평택시 서정동	0.0107
12	오산시 세마동	0.1795	화성시 양감면	0.1533	화성시 반월동	0.0105
13	평택시 지산동	0.1779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0.1493	화성시 정남면	0.0103
14	화성시 매송면	0.1750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1401		

	BDR		BOR		BVI
15	인천 부평구 부평2동	0.1556	화성시 동탄면	0.1396	
16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1541	서울 종로구 교남동	0.1363	
17	오산시 초평동	0.1493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1346	
18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0.1472	화성시 병점2동	0.1269	
19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1442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0.1263	
20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0.1426	화성시 장안면	0.1256	
21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0.1395	화성시 팔탄면	0.1213	
22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0.1371	하남시 덕풍1동	0.1200	
23	서울 성북구 안암동	0.1335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0.1191	
24	화성시 동탄면	0.1316	화성시 기배동	0.1176	
25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1306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0.1169	
26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0.1291	의왕시 부곡동	0.1143	
27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0.1198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1116	
28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0.1182	관악구 봉천8동	0.1103	
29	화성시 봉담읍	0.1140	금천구 독산2동	0.1068	
30	안산시 상록구 사2동	0.1048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0.1042	
31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0.1040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1029	
3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1022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0.1003	
33	화성시 우정읍	0.0991	화성시 우정읍	0.0994	
34	인천 서구 석남2동	0.0954	의왕시 고천동	0.0988	
35	오산시 중앙동	0.0948	화성시 봉담읍	0.0892	
36	용인시 기흥구 여정동	0.0924	성남시 분당구 야탑2동	0.0867	
37	화성시 정남면	0.0919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0.0854	
38	화성시 진안동	0.0915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0.0839	
39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0.0906	관악구 봉천1동	0.0826	
40	평택시 서정동	0.0903	구리시 갈매동	0.0824	
41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0.0893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0811	
42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0.0890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0.0810	
43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0.0872	화성시 정남면	0.0796	
44	인천 동구 금창동	0.0870	평택시 송탄동	0.0786	
45	시흥시 연성동	0.0861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0.0771	
46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855	오산시 신장동	0.0767	
47	군포시 수리동	0.0851	서울 강남구 대치4동	0.0765	
48	서울 관악구 봉천9동	0.0843	안산시 상록구 이동	0.0748	
49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0.0806	노원구 상계8동	0.0745	
50	서울 성북구 길음2동	0.0804	오산시 남촌동	0.0720	
51	인천 서구 검단1동	0.0795	인천 중구 용유동	0.0691	
52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0.0793	평택시 서정동	0.0685	
53	평택시 서탄면	0.0771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0.0676	
54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0.0768	성남시 중원구 중동	0.0669	
55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0.0760	송파구 문정2동	0.0653	
56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0.0760	군포시 광정동	0.0648	

	BDR		BOR		BVI
57	인천 계양구 계산2동	0.0739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0.0639	
58	인천 동구 만석동	0.0733	오산시 세마동	0.0627	
59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0.0706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0.0627	
60	군포시 대야동	0.070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0.0618	
61	서울 관악구 봉천5동	0.0704	오산시 초평동	0.0589	
62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0.0699	안산시 상록구 일동	0.0573	
63	안산시 상록구 일동	0.0692	서울 관악구 신림5동	0.0573	
64	과천시 중앙동	0.0687	서울 용산구 원효로2동	0.0573	
65	오산시 남촌동	0.0681	인천 연수구 동춘3동	0.0569	
66	이천시 장호원읍	0.0679	오산시 대원동	0.0564	
67	광명시 하안3동	0.0678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0.0554	
68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0.0672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0.0553	
69	이천시 설성면	0.0669	시흥시 군자동	0.0552	
70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0.0668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0.0550	
71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655	평택시 청북면	0.0549	
72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0.065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0.0542	
73	인천 남구 주안3동	0.0652	서울 용산구 원효로1동	0.0530	
74	양주시 양주1동	0.0647	서울 서초구 내곡동	0.0513	
75	성남시 분당구 금곡2동	0.0637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0.0503	
76	서울 은평구 신사1동	0.0618			
77	남양주시 지금동	0.0612			
78	서울 마포구 합정동	0.0602			
79	화성시 비봉면	0.0601			
80	의왕시 고천동	0.0600			
81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0.0592			
82	서울 동작구 사당3동	0.0578			
83	남양주시 진건읍	0.0578			
84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0.0577			
85	광주시 실촌읍	0.0572			
86	군포시 산본1동	0.0571			
87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0.0570			
88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0.0567			
89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0.0566			
90	안성시 서운면	0.0556			
91	화성시 남양동	0.0538			
92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0.0533			
93	서울 강남구 대치2동	0.0532			
94	화성시 팔탄면	0.0531			
95	군포시 광정동	0.0527			
96	인천 남구 도화2동	0.0524			
9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0.0518			
98	서울 송파구 가락2동	0.0513			

	BDR		BOR		BVI	
99	하남시 신장2동	0.0513				
100	의왕시 내손2동	0.0509				
101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0.0505				
102	김포시 고촌면	0.0502				
103	평택시 비전2동	0.0501				

(3) 일상생활권

	DDR		DOR		DVI	
1	화성시 화산동	0.4687	하남시 감북동	0.8613	하남시 감북동	0.0571
2	화성시 기배동	0.4543	화성시 팔탄면	0.7281	화성시 봉담읍	0.0446
3	화성시 동탄면	0.4522	오산시 세마동	0.2524	화성시 병점1동	0.0379
4	화성시 매송면	0.4090	화성시 매송면	0.250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361
5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3882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239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336
6	화성시 반월동	0.3387	평택시 서탄면	0.2329	화성시 동탄면	0.0312
7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3247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1781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254
8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2824	화성시 동탄면	0.1777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0244
9	화성시 봉담읍	0.2812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1729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0235
10	화성시 병점1동	0.2771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1591	화성시 진안동	0.0191
11	화성시 병점2동	0.2666	서울 송파구 가락1동	0.1394	화성시 반월동	0.0185
12	화성시 팔탄면	0.2264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1345	오산시 중앙동	0.0170
13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2158	광주시 도척면	0.1320	화성시 팔탄면	0.0170
14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1950	평택시 진위면	0.1309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158
15	오산시 세마동	0.1819	화성시 서신면	0.1273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140
16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1813	시흥시 정왕4동	0.1098	오산시 남촌동	0.0111
17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0.1789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1090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0105
18	화성시 진안동	0.1763	화성시 장안면	0.1066	화성시 화산동	0.0103
19	화성시 정남면	0.1501	화성시 병점1동	0.1044	평택시 진위면	0.0103
20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1325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0.0846	서울 송파구 가락1동	0.0100
2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1296	화성시 화산동	0.0840		
22	평택시 서탄면	0.1296	안성시 양성면	0.0834		
23	평택시 팽성읍	0.1264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820		
24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1079	의왕시 부곡동	0.0752		
25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1072	구리시 교문2동	0.0752		
26	오산시 중앙동	0.1068	파주시 월롱면	0.0747		
27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0.1057	서울 동작구 흑석3동	0.0727		
28	용산구 효창동	0.0998	화성시 반월동	0.0718		
29	오산시 남촌동	0.0951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0.0685		

	DDR		DOR		DVI
30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0.0951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0.0685	
31	화성시 비봉면	0.0936	의왕시 고천동	0.0658	
32	화성시 향남면	0.0930	화성시 진안동	0.0626	
33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0.0883	평택시 신장2동	0.0566	
34	오산시 신장동	0.0880	서울 종로구 교남동	0.0560	
35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0.0840	화성시 향남면	0.0552	
36	인천 연수구 연수2동	0.0838	과천시 문원동	0.0543	
37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0.0771			
38	서울 송파구 풍납2동	0.0770			
39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0.0755			
40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0.0719			
41	평택시 서정동	0.0718			
42	오산시 대원동	0.0699			
43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0.0688			
44	서울 은평구 수색동	0.0603			
45	의왕시 고천동	0.0602			
46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0.0597			
47	평택시 진위면	0.0572			
48	화성시 남양동	0.0566			
49	남양주시 양정동	0.0543			
50	서울 성동구 왕십리1동	0.0529			
5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522			

2) 2016년

(1) 통근권

	JDR		JOR		VI	
1	화성시 동탄2동	0.265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3664	화성시 봉담읍	0.0364
2	화성시 매송면	0.2400	화성시 기배동	0.2692	화성시 반월동	0.0300
3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2086	화성시 봉담읍	0.2215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233
4	화성시 기배동	0.1972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2100	화성시 병점1동	0.0191
5	화성시 병점2동	0.1894	오산시 신장동	0.200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179
6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1875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1856	화성시 동탄1동	0.0170
7	화성시 화산동	0.1827	화성시 반월동	0.1723	화성시 향남읍	0.0161
8	화성시 반월동	0.1644	화성시 남양읍	0.1689	화성시 남양읍	0.0155
9	화성시 동탄3동	0.1570	화성시 병점1동	0.1673	오산시 중앙동	0.0145
10	화성시 봉담읍	0.1567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1667	의왕시 부곡동	0.0145
11	화성시 동탄1동	0.1531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1667	오산시 신장동	0.0139
12	화성시 병점1동	0.1497	화성시 화산동	0.1500	화성시 진안동	0.0136
13	화성시 진안동	0.1491	화성시 장안면	0.1500	서울 구로구 구로1동	0.0124
14	화성시 마도면	0.1429	군포시 군포2동	0.142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118
15	오산시 신장동	0.1339	화성시 우정읍	0.1307	의왕시 고천동	0.0115
16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1290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1304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0109
17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1104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0.1304	서울 금천구 가산동	0.0106
18	의왕시 부곡동	0.1041	화성시 동탄면	0.1257	화성시 동탄3동	0.0106
19	오산시 세마동	0.1026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1250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0.0103
20	의왕시 내손1동	0.0957	화성시 정남면	0.1195	군포시 군포1동	0.0103
21	화성시 서신면	0.0909	화성시 매송면	0.1176	화성시 동탄2동	0.0103
2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880	화성시 향남읍	0.1148		
2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815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0.1111		
24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811	화성시 양감면	0.1111		
25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0783	화성시 팔탄면	0.1037		
26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0.0769	화성시 동탄4동	0.1026		
27	화성시 비봉면	0.0769	의왕시 고천동	0.1012		
28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0765	의왕시 부곡동	0.1005		
29	화성시 동탄4동	0.073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1003		
3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0.0727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0990		
31	성남시 분당구 구미1동	0.0690	화성시 진안동	0.0986		
32	화성시 정남면	0.0685	화성시 동탄1동	0.0864		
33	의왕시 오전동	0.0674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0.0845		
34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0658	오산시 세마동	0.0840		
35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0649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0.0833		
36	하남시 위례동	0.0645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0.0811		
3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603	화성시 마도면	0.0789		
38	오산시 중앙동	0.0588	군포시 대야동	0.0769		

	JDR		JOR		VI
39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0583	의왕시 청계동	0.0755	
40	화성시 송산면	0.0583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0.0721	
41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0.058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0709	
42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0.0577	화성시 서신면	0.0690	
43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0.0571	성남시 분당구 이매1동	0.0690	
44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0.0566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0676	
45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0.0556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0.0636	
46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0.0556	오산시 초평동	0.0606	
47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0.0548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0.0605	
48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0.0505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0.0597	
49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050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0594	
50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577	
51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0.0556	
52			안성시 삼죽면	0.0556	
53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0.0556	
54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0.0510	

(2) 업무권

	BDR		BOR		BVI	
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1.0000	포천시 영중면	1.0000	화성시 반월동	0.0494
2	화성시 반월동	0.5000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75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401
3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0.5000	이천시 장호원읍	0.5000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340
4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0.5000	화성시 병점1동	0.4286	화성시 봉담읍	0.0309
5	서울시 중구 명동	0.5000	화성시 팔탄면	0.428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309
6	화성시 동탄1동	0.4000	의왕시 부곡동	0.4000	화성시 기배동	0.0247
7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0.3333	화성시 동탄1동	0.3333	화성시 매송면	0.0247
8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0.3333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3333	오산시 대원동	0.0247
9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0.3333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3333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216
10	화성시 진안동	0.2500	이천시 창전동	0.3333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216
11	화성시 매송면	0.2143	화성시 정남면	0.3333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0154
12	화성시 화산동	0.2000	화성시 남양읍	0.2857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154
13	화성시 병점1동	0.2000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2500	오산시 신장동	0.0154
14	의왕시 부곡동	0.2000	화성시 동탄4동	0.2500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123
15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0.2000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2500	오산시 세마동	0.0123
16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동	0.2000	화성시 진안동	0.2000	오산시 남촌동	0.0123
17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1818	화성시 기배동	0.2000	서울 서초구 양재1동	0.0123
18	오산시 남촌동	0.1667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0.2000	남양주시 금곡동	0.0123
19	화성시 기배동	0.1579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0.2000		
2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1429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0.2000		

	BDR		BOR		BVI
21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0.1429	안성시 안성2동	0.2000	
22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0.1429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1667	
23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0.1333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0.1667	
24	안산시 단원구 와동	0.1333	오산시 중앙동	0.1579	
25	화성시 봉담읍	0.1250	의왕시 내손1동	0.1429	
26	화성시 동탄4동	0.1250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0.1429	
27	인천시 남구 학익1동	0.1250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0.1250	
28	시흥시 월곶동	0.1250	화성시 봉담읍	0.1176	
29	군포시 금정동	0.1154	화성시 향남읍	0.1176	
30	오산시 중앙동	0.111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1111	
31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0.1111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0.1000	
32	평택시 지산동	0.1000	남양주시 별내동	0.1000	
33	부천시 소사본동	0.1000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0.0909	
34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909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0.0909	
35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0.0909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0.0870	
36	군포시 군포1동	0.0870	화성시 반월동	0.0833	
37	의왕시 내손1동	0.083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0.0833	
38	안산시 상록구 사1동	0.0741	군포시 금정동	0.0800	
39	용인시 처인구 동부동	0.0714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0.0800	
40	시흥시 은행동	0.0714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0.0714	
41	오산시 세마동	0.0667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0.0667	
4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0.0667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0.0652	
43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0.0667			
44	성남시 분당구 구미1동	0.0625			
45	평택시 신평동	0.0625			
46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0.0588			
47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0.0526			
48	시흥시 신천동	0.0526			

(3) 일상생활권

	DDR		DOR		DVI	
1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285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1639	화성시 반월동	0.0494
2	화성시 반월동	0.2692	화성시 매송면	0.136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401
3	화성시 기배동	0.166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109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0.0340
4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1556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909	화성시 봉담읍	0.0309
5	화성시 매송면	0.1515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0.0909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309
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0.1154	화성시 장안면	0.0909	화성시 기배동	0.0247
7	안성시 삼죽면	0.1111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889	화성시 매송면	0.0247
8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909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0.0789	오산시 대원동	0.0247

	DDR		DOR		DVI	
9	화성시 동탄2동	0.0882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0.0769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0.0216
10	화성시 서신면	0.0833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0.0690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0.0216
11	화성시 봉담읍	0.0792	양주시 양주1동	0.0667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0.0154
12	의왕시 고천동	0.0714	화성시 반월동	0.0638	서울 강남구 역삼1동	0.0154
13	화성시 우정읍	0.0606	화성시 기배동	0.0588	오산시 신장동	0.0154
14	오산시 세마동	0.0556	화성시 동탄1동	0.0588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0.0123
15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0.0545	화성시 팔탄면	0.0556	오산시 세마동	0.0123
16	평택시 청북읍	0.0541	남양주시 금곡동	0.0533	오산시 남촌동	0.0123
17					서울 서초구 양재1동	0.0123
18					남양주시 금곡동	0.0123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Spatial Boundary and Characteristics of Suwon City-Region

Suwon, with a population of 1.25 million, is the capital city of Gyeonggi Province. Hwaseong and Osan are generally known as Suwon city-region because until 1949 they were a singl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two therefore share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with Suwon. Meanwhile, recent urban developments have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Suwon and Yongi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patial boundary of the 'city-region' of Suwon, which has a strong functional connection with Suwon City.

The functional linkage between Suwon and the surrounding areas was analyzed by using the data of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6 and 2016. We then derived functional city-regions - commute, business, and daily-life - by using three indices : dependency ratio, occupancy ratio and traffic volume. We also classified the surrounding areas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number of functional city-regions satisfied.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main areas of Suwon city-region are formed around Hwaseong, Osan, and Yongin as commonly known. Suwon emerged as the largest city in the souther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s a functional center providing urban services in the hinterlands. It is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nd of major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However, since the regions located at the north of Suwon are directly influenced by Seoul, the scope of Suwon city-region i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surrounding Suwon. A few regions north of Suwon are classified as Suwon city-region just as Uiwang and Gunpo.

In the functional city-region, the spatial range of commute region is the largest,

with suburbanization in housing and employment which is most characteristic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contrast, the range of daily-life region was small. The spatial range of Suwon city-region in 2016 was smaller than it was in 2006, and this tendency is particularly strong in the Hwaseong and Osan areas, south of Suwon. Among the three urban functions, the spatial extent of the daily-life region has been reduced the most. In the commute and business regions, spatial extent moved slightly to the north, excluding a large part of the southern part and adding part of the northern area. Due to these changes, in 2016, 'the Same city-region' which shares core urban functions with Suwon, has been reduced the most since 2006.

The major reason for the change in the spatial extent of the Suwon city-region is the enhancement of functional self-sufficiency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Hwaseong and Yongin; this area comprises most of the Suwon city-region. In the southern region where the shrinking trend of the Suwon city-region is most visible, the Dongtan New Town is being replaced by some of the urban service functions provided by Suwon. These changes have had greatest impact on the range of daily-life region related to shopping, dining, and leisure, which are easy to replace by developing residential tow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larify the spatial extent and change pattern based on functional linkage of Suwon city-region. This topic has not been previously studied. It can also offer useful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urban policies based on inter-regional linkages and cooperation.

Keyword : city-region, central place, functional linkage, spatial structure, urbanization

| 저자 약력 |

이성호

지리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2sungho3@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학 연구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방안 연구」 (2018, 수원시정연구원)

「중국 특색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2017, 대한지리학회지)

「중국 저렴주택 모델의 지방적 분화」 (2017, 공간과 사회)

